

최 종
연구보고서

농가 도우미제도 도입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Farm Helper System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 립 부

보고서 집필 분담

연구 담당자	담당 분야
정명채	연구 총괄, 제2장, 제4장(1절), 제6장, 제7장, 제8장
박대식	제1장, 제3장, 제4장(2, 3절), 제5장

제 출 문

농림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가 도우미제도 도입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1999. 10.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 수석연구위원 정명채
연구참여자 : 부연구위원 박대식

목 차

제 1 장 서 론

1. 농가 도우미제도의 필요성 1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5
3.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7
4. 연구의 내용과 방법 10

제 2 장 농가 도우미제도의 종류와 범위

1. 도우미의 노동 종류별 분류 12
2. 도우미의 공급처별 분류 14

제 3 장 우리 나라 농가 도우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낙농헬퍼제도 17
2. 농협의 여성농업인 도우미제도 23
3. 농림부의 농가 도우미제도 도입계획 25

제 4 장 주요 외국의 농가 도우미제도

1. 독일의 농가 도우미제도 28
2. 일본의 농가 도우미제도 31
3. 주요 외국의 농가 도우미제도 비교 36

제 5 장 농가 도우미제도에 관한 여론조사

1. 여론조사 개요 40
2.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41
3. 농가 도우미제도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 47

제 6 장	농가 도우미제도의 도입 방안	
1.	농가 도우미제도의 도입 방법과 범위	76
2.	농가 도우미제도의 관리체계 수립	85
3.	기존 농가 도우미제도의 개선과 확대 적용 방안	92
제 7 장	농가 도우미 인력의 양성 방안	
1.	농가 도우미의 선발과 교육	96
2.	사고재해 보상과 분쟁 조정	101
제 8 장	요약 및 결론	108
	참 고 문 헌	115
	Abstract	117
	부 록	119

표 목 차

제 2 장

표 2-1	농가 도우미의 종류(취업형태, 일의 성격별)	14
표 2-2	농가 도우미의 종류(공급처별 구분)	16

제 3 장

표 3-1	연도별 헬퍼사업 실시 현황	19
표 3-2	연차별 축산발전기금 지원내역	20
표 3-3	'97 및 '98년 헬퍼사업 추진 실적	20
표 3-4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의 변화	21
표 3-5	연차별 투자계획	27

제 4 장

표 4-1	도우미 이용료	31
표 4-2	낙농헬퍼 이용조합 수의 변화	33
표 4-3	활동 형태별 낙농헬퍼 이용조합 수	33
표 4-4	낙농헬퍼 요원 수	34
표 4-5	주요 외국의 농가 도우미제도	37

제 5 장

표 5-1	여론조사 규모 및 응답 비율	40
표 5-2	주요 소득원을 기준으로 본 응답자들의 분포	41
표 5-3	응답자들의 연령분포	42
표 5-4	응답자들의 학력	42
표 5-5	가족 수	43
표 5-6	영농 후계자 유무	44
표 5-7	영농참여 정도	44

표 5-8	영농 경력	45
표 5-9	농외 사업 또는 취업	46
표 5-10	지난 해 연간소득	47
표 5-11	도움을 청하는 대상자	48
표 5-12	농가 도우미제도 인지 정도	49
표 5-13	주요 소득원별 농가 도우미제도 인지 정도	49
표 5-14	연령별 농가 도우미제도 인지 정도	50
표 5-15	농외취업 유·무별 농가 도우미제도 인지 정도	50
표 5-16	농가 도우미제도의 필요성 인지	51
표 5-17	영농 후계자 유·무별 농가 도우미제도의 필요성 인지	52
표 5-18	연령별 농가 도우미제도의 필요성 인지 정도	52
표 5-19	농가 도우미제도의 농어민 복지증진에 대한 기여도	53
표 5-20	연령별 농가 도우미제도의 농어민 복지증진 기여도	54
표 5-21	학력별 농가 도우미제도의 농어민 복지증진 기여도	54
표 5-22	연간소득별 농가 도우미제도의 농어민 복지증진 기여도	55
표 5-23	농가 도우미가 가장 필요한 경우	56
표 5-24	연령별 농가 도우미가 가장 필요한 경우	57
표 5-25	산모도우미의 이용가능 기간	58
표 5-26	연간소득별 산모도우미의 이용가능 기간	59
표 5-27	가장 필요로 하는 농가 도우미	60
표 5-28	연령별 가장 필요한 농가 도우미	61
표 5-29	연간소득별 가장 필요한 농가 도우미	62
표 5-30	농가 도우미 이용료의 정부 부담 정도	63
표 5-31	농외 취업 유·무별 농가 도우미 이용료의 정부 부담 정도	64
표 5-32	농가 도우미제도 이용의사	65
표 5-33	주요 소득원별 농가 도우미제도 이용의사	65
표 5-34	연령별 농가 도우미제도 이용의사	66
표 5-35	학력별 농가 도우미제도 이용의사	66
표 5-36	농외 취업 유·무별 농가 도우미제도 이용의사	67

표 5-37	농가 도우미제도를 이용하겠다는 비율	68
표 5-38	적정 농가 도우미 이용료(1일)	69
표 5-39	도우미 이용료 차등 여부	70
표 5-40	연령별 도우미 이용료 차등 여부	71
표 5-41	학력별 도우미 이용료 차등 여부	71
표 5-42	연간소득별 도우미 이용료 차등 여부	72
표 5-43	농가 도우미 요원 참여의사	72
표 5-44	연령별 농가 도우미 요원 참여의사	73
표 5-45	학력별 농가 도우미 요원 참여의사	73
표 5-46	농가 도우미 요원으로 참여하겠다는 분야별 비율	74

제 7 장

표 7-1	일본 낙농헬퍼제도의 상해보험제도	102
표 7-2	농협의 농작업상해 공제제도	103
표 7-3	농협의 농작업상해 공제제도의 보장내용	104
표 7-4	농협 농작업상해 공제제도의 공제료 예시	104
표 7-5	농협 농작업상해 공제제도의 공제 지급액	105

그 립 목 차

제 6 장

- 그림 6-1 지방행정조직을 이용한 관리체계도 88
- 그림 6-2 농업협동조합을 이용한 관리체계도 89
- 그림 6-3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의 합동관리체계도 91

제 7 장

- 그림 7-1 도우미 양성 체계도 99

제 1 장 서 론

1. 농가 도우미제도의 필요성

1.1. 농가의 핵가족화

1960년부터 추진된 도시 중심의 경제개발과 산업화는 농어촌의 인력을 도시부문으로 흡입하게 되었다. 도시 취업 및 취학을 통한 이농은 1960년대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1970~80년대에 이르러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농은 대부분 도시 적응이 용이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그 결과 도시 적응이 힘든 저학력 층이나 장년 및 노령 세대들은 농어촌에 남게 되어 분산가족이나 핵가족 형태를 띄는 경우가 많다. 즉, 농촌에는 어쩔 수 없이 농사를 떠맡은 노년 또는 장년세대들이 주로 남게 되어 농촌인구의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급속하게 진전된 대가족제도의 붕괴와 핵가족화 과정에서 농촌에 남게 되는 농가들은 농업을 포기하고 떠나는 영세 소농들의 농지까지 떠맡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모자라는 농가 일손을 해결하기 위한 농업기계화가 정부의 농업구조개선정책의 뒷받침을 받아 빠른 속도로 진전되어 왔다.

그러나 농장은 점점 규모화되고 상시 생산할 수 있는 시설농업이 늘어남으로써 농촌은 노동력 부족과 함께 일손을 놓을 수 있는 농한기가 없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농촌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모자라는 일손 때문에 노령인력마저도 영농에 매달리게 되자 부락 내의 큰 일이 있을 때에는 일을 도와 줄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다. 따라서 마을 내에 존재하던 계나, 두레 등 농사공동체와 전통적인 마을의 상호부조 기능마저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농촌사회의 변화와 농촌가족의 핵가족화는 결국 가족 내에서 큰 일이 생겼을 때 이를 가족 내에서 감당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 큰 사고의 경우 가족 내에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이 파탄나거나 농사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급상황 발생 시의 농장관리 노동력의 제도적인 대행서비스 장치 개발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1.2. 영농의 규모화와 농업 고용 노동력의 부족

1960년대 이후 산업화 초기의 이농으로 인한 영농규모의 확대는 '80년대까지만 해도 그 속도가 매우 느렸다. 그리고 영농의 기계화에 의해 노동력이 대체됨으로 인해서 노동부족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농규모화를 목표로 하는 농업구조개선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영농의 규모확대에 따른 노동력 부족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때부터 우리 농업의 영농형태는 자동화, 시설화, 첨단기술화 등의 방향으로 급속하게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농업구조의 변화와 영농의 자동화, 시설화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시설영농의 경우 하우스의 각종 시설을 관리하고 상시 작업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상시 고용인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대규모 영농의 경우는 파종과 이식 및 수확기에 필요한 계절고용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축산업의 경우는 상시관리 인력 등의 수요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농촌사회도 크게 변화되어 전통적 상시고용 노동력인 머슴을 구하기는 어려워지고 계절고용이나 1일 고용 인력마저도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결국 노동을 서로 교환하는 품앗이 형태의 노동능력이 없이는 영농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변했다. 그래서 상시 고용인력을 구할 길이 없는 농가들은 (특히 축산부문) 최근에는 중국교포들이나 해외 노동력들을 불법적으로 고용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IMF 관리체제 이래로, 기업도산, 실업증대 등으로 인해서 노동인력이 남아 농어촌 인력문제도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금년에 와서는 농업노동의 기피와 도시산업부문의 경기회복으로 인한 실업완화로 다시 농업 노동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태로 발전하고 있다.

농업노동은 노동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좋지 않아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기피하고 있고 특히 젊은 층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높다. 계절 고용이나 년고의 경우는 전통적인 머슴이 가지는 사회적 지위와 천민이라는 인식이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 이와 같이 고용노동을 구하기 힘들게 된 농업부문에서는 결국 가족노동력이 없이는 기본적인 영농까지도 어렵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잘 반영한 것이 “도시에는 실업자가 무료급식소에 줄을 서 있는데 농촌에는 일손이 모자라서 밭을 동동 구른다”는 최근에 보도된 한 매스컴의 사회고발이었다. 이것은 도시에서 실업자로 실업급식 지원을 받고 사는 것이 농업노동자나 머슴 노릇을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사회적 인식이 지배하고 있고 농업노동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다.

1.3. 영농대행 노동력 수요의 증대

이제 영농의 형태는 대부분 가족들의 노동력으로 규모화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한 자동화와 기계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원들은 각자 영농의 한 분야를 담당하는 자연스러운 기능 분담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농업경영의 한 분야를 분담하고 있는 가족원 중에서 누군가가 질병이나 사고로 노동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농업경영은 엉망이 되고 만다. 큰 사고나 사망의 경우는 농가 자체의 기능이 마비되어 폐농하거나 큰 빚을 지게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축산농가에서 가족원이 사망하는 경우는 사망한

가족원이 담당하고 있던 기능의 공백으로 인한 문제 외에 사망처리를 위해 뛰어다니는 가족들의 당황함과 사후처리 문제로 농장을 돌보지 못하게 되면 가족들이 굶어죽거나 충격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한 농가피해가 커서 폐농이 되기도 한다. 즉, 영농대행 서비스제도는 특히 축산 분야나 시설영농 분야와 같이 시간을 맞추어 사료를 주고 관수하거나 환기하는 등의 정기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농장에서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선행 외국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진 농민들의 가계보호와 생산안정 지원을 위해 그 역할에 알맞는 농업노동자를 파견시켜주는 영농대행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럽의 대다수 국가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농어민 복지정책과 생산안정화 정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농어민 복지 정책의 형태로 체계화시킨 경우는 프랑스나 독일의 농가 헬퍼 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를 보면 농가 가족원의 질병치료, 입원, 요양, 농가주부의 임신, 출산 등 의료와 관련되는 문제와 농작업 사고와 관련되는 문제로 영농대행이나 가사대행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면 국민의료보험이나 농업 노동사고 보험 등 사회보험에서 급여의 형태로 이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생산안정정책의 형태로 시행되는 경우는 영국이나 네덜란드 등의 농가헬퍼제도가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위와 같은 시급한 상황 발생시 영농의 중단을 막고 농가 가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 및 가사도우미를 파견하거나 그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영농도우미나 가사도우미 이용을 통해 농가의 대사 발생 시 농업노동을 대행하거나 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농가도우미제도의 필요성은 이들 선행 외국들이 계속 이 제도를 확대·적용하고 강화시켜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증명될 수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농업구조 및 농촌사회의 변화에서도 농가의 대사 발생시 이를 대행할 수 있는 농가 도우미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점점 더 높아가고 있다.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지금까지의 우리 농업은 계절농업의 특성을 지니는 벼농사 중심의 영농구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던 것이 농업근대화의 영향으로 비닐하우스와 유리하우스 등 시설농업의 비중을 높이게 되었고 비육우와 낙농, 양돈, 양계 등 축산업의 비중도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시설농업과 축산업의 증가는 계절과 관계 없는 상시고용노동의 수요를 크게 증가시켰다. 과거 우리 나라 농업부문의 상시고용 노동은 소수의 대농과 부농들에게만 적용되는 머슴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낮은 사회적 인식 등으로 인해서 머슴제도가 약화됨에 따라 머슴제도를 통한 상시고용 노동은 그 공급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한편 우리 농촌의 농가들은 현재 50% 정도가 60세 이상의 노령 영농주로 구성되어 있고 70% 이상이 핵가족화 되어 있는 상태이다. 정부에서는 젊은 청장년 영농주를 중심으로 영농의 규모화와 새로운 농법 및 품목전환을 추구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노동력이 빠듯한 가족농들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노동력 부족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두레나 농사계 등의 노동공동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전통적 노동공동체들이 모두 사라지고 겨우 필요에 따라 노동을 주고받는 식의 품앗이 노동만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공동체는 집단 노동이 필요한 벼농사 및 대가족제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으나 이제 벼농사 비중의 감소, 기계화의 진전, 대가족제도의 붕괴 등으로 이들 조직들이 모두 해체된 상태이다. 이제 우리 나라의 농가들은 농장경영을 위한 노동을 가족노동 중심으로 체계화시킬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농장의 규모확대도 노동력의 확보 가능성에 따라 제한할 수 밖에 없는 요인이 크게 작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농정이 추구하고 있는 영농의 작목전환이나 규모화와 시

설화, 자동화 등 농업구조개선은 이와 같은 농촌노동력 부족과 핵가족 영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농가 도우미제도는 이와 같은 농촌 노동력 문제해결의 한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농가 도우미제도는 두레와 품앗이와 같은 전통적인 노동 협력구조가 붕괴되고 난 이후 급변하고 있는 농촌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노동교환 및 상부상조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축산업부문에 낙농헬퍼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 농업부문에서의 농가 도우미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

농가 도우미제도(helper system)는 농업인이 경조사, 출산, 교육참가, 질병, 휴가 등으로 농작업이나 가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할 경우에 도우미가 일정액의 이용료를 받고 이를 대신해주는 제도를 지칭한다. 농가 도우미제도는 산전·산후의 건강관리, 가사대행, 영농대행 등에 있어서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여성실업자의 고용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농가 도우미제도는 이와 같이 핵가족 농가나 가족농들의 영농활동을 돕는 간접적인 영농지원정책이며 농업노동정책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영농지원책으로서 그리고 농가의 노동지원대책으로서 농가 도우미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강구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 기존의 관련 도우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② 주요 외국의 농가 도우미제도를 검토하며, ③ 농가 도우미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④ 농가 도우미제도의 틀과 구체적인 내용과 실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3.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국내에서 농가 도우미제도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적은 아직까지 없었다. 다만 농가 도우미제도와 관련되는 국내 연구는 주로 낙농헬퍼제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신해식(1991)은 “낙농헬퍼제도 도입의 필요성”에서 낙농헬퍼제도(dairy helper system)란 “낙농가로부터 목장 경영 및 관리를 위탁받아 약속된 기간동안 전문적인 기술자로 하여금 관리 대행케 하며 낙농가가 일정액의 이용료를 지불하는 제도”라고 개념정의 하고 있다. 낙농헬퍼제도는 놓고 즐기기 위한 비생산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관혼상제, 질병, 사고 등의 돌발적인 사태시에 대응하는 것에서부터 연수, 교육, 여행, 휴일 확보 등의 정기적인 대응까지 낙농의 복지적 측면에서 보다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해 주는 선진 낙농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낙농헬퍼제도의 이용 대상을 가족노동력 중심의 전업낙농가로 제한할 것과 헬퍼 요원의 자격증제도 도입 및 기술 향상에 의한 자질 보장을 강조하였다.

최원근(1993)은 “낙농 헬퍼 사업 개선 방향”에서 낙농헬퍼 사업의 개선 방향으로 정기이용체계의 확립, 전일제 이용, 헬퍼 이용료의 현실화, 낙농헬퍼 사업기금의 창설를 주장하였다.

축협중앙회(1997)는 “낙농헬퍼이론 교육교재”에서 낙농헬퍼사업의 문제점으로 헬퍼 이용회원 확보 미흡, 정기이용체계 미흡, 헬퍼가동을 저위, 헬퍼사업조합의 재정자립도 열악, 안정적 헬퍼요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흡, 헬퍼사업 관련 통일된 지침 및 기준 미정립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따른 발전대책으로는 ① 낙농헬퍼제도의 인식 재정립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 ② 정기이용체계 조기정착 유도, ③ 임시헬퍼제도의 도입, ④ 헬퍼 요원의 처우개선과 낙농후계자 육성, ⑤ 낙농헬

퍼사업의 자율 운영조직 전환 유도, ⑥ 정부의 사업지원 지속 및 확대, ⑦ 일관 사업체계 구축 등을 주장하였다.

신해식(1998)은 “낙농헬퍼의 발전조건에 관한 실증적 고찰”에서 일본의 낙농헬퍼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 나라 낙농헬퍼제도의 실상은 어떠하며 시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낙농헬퍼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발전조건으로는 ① 정기 휴일형의 조기 정착, ② 헬퍼 이용료의 현실화, ③ 헬퍼제도에 대한 낙농가들의 인식 전환, ④ 헬퍼요원에 대한 처우와 사회적 신분 보장, ⑤ 교육 및 실습을 통한 헬퍼요원의 정예화, ⑥ 각종 제도의 개선 및 재정 지원을 주장하였다.

최근에 와서 몇몇 학자들이 유럽의 헬퍼제도를 소개하기 시작하고 있다.

정명채 외(1997)는 “농업구조개선과 중소농대책”에서 영농헬퍼제도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영농헬퍼제도를 “영농주가 급한 업무나 회의참석 등으로 농장을 비워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 기간 동안 농장을 대신 맡아 관리해 주는 대체 노동력 관리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은퇴 영농인들과 탈농정책에 의해 지원 받고 탈농한 자 중에서 여유시간이 있는 자들로 영농헬퍼조직을 만들어 운영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영농헬퍼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농가들은 급한 일이 있을 때 전문분야의 헬퍼를 구할 수 있어 경영에 도움이 되고, 헬퍼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게 되는 은퇴농민이나 탈농자들은 부분적인 영농지원 활동과 소득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박민선(1998)은 “유럽의 농작업·가사 대행서비스제도”라는 글에서 유럽 각국의 운영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농업인에 대한 대행서비스제도는 유럽에서 1960년대에 시작되었으며 유럽의 농가 대행서비스제도는 농작업과 가사에 대한 서비스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제도화의 정도와 이에 따른 국가의 개입이나 지원정도는 나라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각국이 농업과 가사에 대한 대행서비스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은 지역공동체가 사라지고 친인척을 이용한 노동의 교환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

로 파악하고 있다.

박민선(1999)은 “EC 회원국의 여성농업인 정책”이라는 글에서 EC 회원국의 대행서비스제도의 특성으로 ① 대행서비스를 시행하는 주체는 농민단체가 많음, ② 정부지원이 대행서비스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 ③ 대행서비스의 내용은 국가간에 차이가 남, ④ 대행서비스를 받는 이유는 질병, 입원, 출산, 재해, 연수, 농업단체 활동, 휴가, 농번기의 과도한 노동 등임, ⑤ 프랑스는 여성에 대한 우대 지원에서 다른 나라보다 앞섬 등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농가 도우미제도와 관련된 연구로는 김영옥과 김이선(1999)은 “21C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연구”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농림부의 농가 도우미제도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의 요구분석을 토대로 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외부인이 가정이나 일터에 출입하는 것을 꺼리고 농촌지역에서는 아직도 주위에 이웃이나 친지 등 대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도우미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여성농업인들은 도우미를 품삯노동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위의 품삯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도우미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농가 도우미제도에 관한 이들의 연구결과는 극소수를 대상으로 한 단편적인 면접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일반화 가능성에 한계점이 있으며 농림부의 도입계획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약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연구의 내용과 방법

4.1. 주요 연구내용

- 농가 도우미제도(Helper System)의 종류와 범위
- 우리 나라 농가 도우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주요 외국의 농가 도우미제도
- 농가 도우미제도에 관한 여론조사
- 농가 도우미제도의 도입 방안
- 농가 도우미 인력의 양성 방안

4.2. 연구방법

4.2.1.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를 위한 주요 자료수집은 우편 설문조사와 기존 자료 수집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우편 설문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 통신원 및 통신원 부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우편 설문조사의 표본 수는 현지 통신원 500명 및 통신원 부인 500명으로 총 1,000명이었다. 표본추출은 현지 통신원 명부를 이용하여 주소득원(작목별)을 기준으로 계통적 표출을 실시하였다. 작목별 표본 수는 주소득원을 기준으로 논농사 400명, 밭농사 200명, 과수 200명, 축산(부소득원 포함) 200명으로 하였다. 조사 기간은 1999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였으며 조사표 회수율은 54.2%(회수된 유효 조사표가 542부임)로 나타났다.

기존 자료 조사는 농림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통계청 등과 같은 관련 기관의 자료 조사, 낙농Helper제도 시행

사례 조사, 농협의 여성농업인 도우미제도 도입계획 검토, 농림부의 농가 도우미제도 도입계획 검토, 기타 국내·외의 농가 도우미제도 관련 문헌 및 자료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4.2.2. 자료분석방법

설문조사는 SPSS for Windows를 사용하여 기술적인 통계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주요 특성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표분석(χ^2)을 추가하였다. 기존 자료조사에서는 각종 자료들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제 2 장

농가 도우미제도의 종류와 범위

1. 도우미의 농업노동 종류별 분류

도우미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우리말로써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도우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농가에 도움을 주는 도우미를 대상으로 한다. 농가가 필요로 하는 즉 농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노동의 종류별로 나누어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노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농사일을 거들어 주는 농업노동이며 또 하나는 농가의 가사 노동이다. 농사일을 도와주는 도우미를 영농도우미라고 하며 가사 일을 도와주는 도우미는 가사도우미라고 한다.

영농도우미는 또한 농업의 종류에 따라 다시 축산업 영농 도우미와 시설영농도우미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더욱 세분하면 낙농도우미, 양돈도우미, 양계도우미, 장미하우스도우미, 채소하우스도우미 등 농사 품목에 따라 얼마든지 각각의 이름을 부칠 수가 있다. 영농도우미가 일반 농업노동자와 다른 것은 전문성을 내포하며 계약에 따라 주어진 기간 동안에 책임있는 농장관리 작업을 한다는 점이다. 도우미는 경영주나 가족구성원인 농민이 해야 할 일을 대행하는 것이므로 대부분이 경영주의 입장에서 책임 있는 관리와

노동을 동시에 요구받게 된다.

가사도우미는 가사일을 도와주거나 대행해주는 도우미이다. 그러나 가정부, 식모 등과 다른 의미를 가지는 점은 역시 경영주나 가족구성원이 해야 할 가정 일을 대행하는 것이므로 전문성과 책임작업이라는 기능을 가지는 점이다. 그러나 길·홍사의 일손 부족을 메꾸기 위해 요청하는 도우미는 최근에 성행하고 있는 파출부의 성격과 다를 바가 없다. 가사도우미도 그가 해야 할 일의 종류에 따라 산모의 산전, 산후 조리를 돕는 출산도우미, 길, 홍 대사 시 큰일을 치루는 때 가사를 돕는 대사 도우미 등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농사일을 돕는 영농도우미와는 다르게 일반 가정 일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농도우미에 비해 노동의 전문성이 전제되지는 않는다.

<표 2-1>에는 취업 형태별, 일의 성격별 농가 도우미의 종류가 제시되어 있다. 즉, 농가 도우미는 취업 형태별로는 직업(전문)도우미와 부업(임시)도우미로 나눌 수 있고 일의 성격별로는 전문도우미와 일반도우미로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취업 형태별 및 일의 성격별로 나눈 농가 도우미의 4가지 유형은 ① 전문적인 농사일을 대행하는 직업도우미, ② 비전문적인 농사일을 대행하는 직업도우미, ③ 전문적인 농사일을 대행하는 부업도우미, ④ 비전문적인 농사일을 대행하는 부업도우미이다.

한편 영농도우미에게 농사일뿐만 아니라 농가의 가사일까지도 함께 돌보아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농가의 가정 일은 전문성이 없어도 가능하므로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가사도우미에게 농사일을 돌보아주도록 요구하는 것은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대개의 경우 농어촌에서는 핵가족 세대원 중 누군가가 사고를 당하면 그가 맡고 있던 농사일을 대행하면서 시급하게 발생하는 가사 일도 약간씩 도와 줄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영농도우미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대개 농가도우미라는 포괄된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농가도우미제도의 본래 목적은 농사일을 대행해 주는 영농도우미를 중심으로 보고 있지만 농가 내에서 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농사일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되는 가정 일도 도와주어야 하므로 이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또한 농사일 중에는 가정

일과 농사일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기 때문이며, 도우미제도의 목적이 농가의 큰 일 발생 시 영농을 계속하게 하고 나아가 가정을 안정시켜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표 2-1 농가도우미의 종류(취업 형태별, 일의 성격별)

취업 형태별	일의 성격별	내 용
직업(전문)도우미	전문도우미	업종별 전문적인 농사일을 대행하는 직업도우미
	일반도우미	일반적인 농업분야의 비전문적 농사일을 대행하는 직업도우미
부업(임시)도우미	전문도우미	업종별 전문적인 농사일을 대행하는 부업도우미
	일반도우미	일반적인 농업분야의 비전문적 농사일을 대행하는 부업도우미

2. 도우미의 공급처별 분류

농가 도우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선형 외국의 사례를 보면 농가에게 도우미를 제공하고 지원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주관하고 있는 곳이 곧 도우미 공급처이며 그것이 도우미의 성격을 구분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었다. 선형 외국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는데 그 하나는 의료보험이나

농업노동 사고 보험 또는 노령 농민 보조 또는 연금보험제도에서 급여의 일종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회보험 급여 도우미’이고 다른 하나는 영농을 돕기 위한 지원은 대개 농업정책이나, 농민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어 ‘농가지원도우미’라고 분류할 수 있다. 농가지원 도우미로는 다시 세분하여 농가주부만을 도와주는 대상으로 하는(여성농업인 지원 정책에 따른) ‘농가주부도우미’, 영농주의 유고 시에만 이를 지원해주는 ‘경영주 도우미제도’ 등이 있다. 도우미제도의 시행을 관장하는 부처별로 보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주관하는 정부도우미와 민간조직이나 농어민 단체들이 행하는 민간단체도우미가 있다.

사회보험 급여도우미 중 의료보험제도에 의한 도우미를 보면 의료보험 급여규정에 의거하여 농가주부가 임신·출산하는 경우 산모의 산전, 산후 조리를 도와주는 출산도우미를 지원하고 질병, 사고 등으로 치료, 입원, 요양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이를 간호해주는 간병도우미, 농가 경영주가 사망한 경우 그 미망인을 도와주기 위한 미망인 도우미와 그가 맡았던 일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농가도우미 등 다양한 보험급여로서의 대행서비스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농가의 도우미제도를 민간조직이나 농어민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대부분 정부로부터 일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표 2-2 농가 도우미의 종류(공급처별 구분)

	공 급 처 별	내 용
사회보험급여 도우미	의료보험급여도우미	질병치료, 입원 시 대행도우미, 출산도우미, 질병사망자 대행도우미
	농업노동사고보험급여도우미	사고 사상자 요양 시 대행도우미, 장애자 간병도우미, 사고사망자 대행도우미
	연금급여도우미	요양급여도우미(은퇴노인의 도우미 인력 지원)
농가지원 도우미	영농도우미	농가 가정 대사 발생 시 농업노동 대행, 각 농업 품목별로 분류(예 : 낙농도우미, 양돈도우미 등)
	가사도우미	농가의 가정 대사 발생 시 가사노동 대행(예 : 산모도우미, 애·경사도우미 등)
	농가도우미	농가의 농업노동과 가사노동 등을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도우미

제 3 장

우리 나라 농가 도우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낙농헬퍼제도

1.1. 도입 및 발전과정

낙농헬퍼제도는 소정의 교육과 전문적으로 훈련된 헬퍼요원이 목장관리를 대행함으로써 낙농업이 안고 있는 특수성을 흡수함과 동시에 가족 중심 낙농경영의 안정적인 기틀을 마련하고 전업농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즉, 1992년 7월에 서울우유에서 경기도지역 9개소에 서 회원 307명 헬퍼요원 18명으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낙농헬퍼사업을 시작하였다. 1993년에는 청주우유, 홍성낙협, 경북중앙낙협, 부산우유가 낙농헬퍼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에 10개 조합이 합류하여 1998년 현재 15개 조합으로 확대되었다.

1.2. 사업 목적 및 내역

낙농헬퍼제도의 주요 목적으로는 ① 낙농가의 연중무휴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가족 중심의 전업농가에 휴가나 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② 낙농가에 발생하는 긴급사태(관혼상제, 질병, 불의의 사고 등)로 인한 일시적 노동공백을 전문헬퍼가 해결함으로써, ③ 낙농가의 사육심리 안정과 낙농후계자의 장기적 육성, 복지낙농의 실현을 구체화하여 낙농산업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헬퍼사업 지역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낙농조합의 업무 구역 내이다. 헬퍼 이용자는 조합원 또는 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반 낙농가는 조합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이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사업대상 조합은 헬퍼 요원을 조합의 업무구역 등을 감안하여 각 지도소(지역)별로 배치 운용하거나 이용농가가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운용하고 있다.

이용료는 기본료, 두수할증료, 시간할증료, 공휴일할증료 등으로 구분 결정하여 운용하되 이용농가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기본료는 착유우 15두를 기준으로 1일 8시간에 약 40,000원 정도이다.

헬퍼의 선발은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축산 및 낙농 관련 전공자 또는 조합 지도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중에서 선발 또는 신규채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선발된 헬퍼는 일정한 자체교육(축협중앙회)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추후에도 정기적인 보충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용농가의 선정은 조합원으로서 가족노동 중심의 전업 낙농가 중에서 돌발적인 사태로 헬퍼 이용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또한 사육 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착유우 20~30두 정도의 전업 낙농가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헬퍼사업은 회원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에게는 이용료를 할해 주고 이용신청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비회원 농가의 사업이용도 지나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1.3. 사업현황

<표 3-1>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낙농헬퍼사업은 1998년 현재 총 15개 조합 32개소에서 사업을 추진중이다. 1997년 및 1998년에는 신규사업을 실시한 조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헬퍼사업 1개소 당 평균 헬퍼요원은 약 2명이며 총 헬퍼 인원은 63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7년부터 헬퍼사업이 조합자율사업으로 전환되어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자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조합에서 헬퍼사업이 약화되고 있다.

표 3-1 연도별 헬퍼사업 실시 현황

구 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8년(계)
사업조합	1개 조합	4	3(1)	5(1)	3(1)	15
사 업 량	9개소	5	5(2)	6(1)	7(4)	32

주) ()은 기존 사업조합의 사업 확대 량임

<표 3-2>에는 연차별 축산발전기금 지원내역이 제시되어 있다. 1992년부터 1996년까지 보조금 817,308 천원, 융자금 1,680,000 천원이 지원되었다. 헬퍼사업 1개소 당 축산발전기금 지원기준('92~'96년까지)을 살펴보면, 1년 차에는 총 18,000 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인건비 12,000 천원, 차량, 장비구입 6,000 천원), 2~3년 차에는 총 6,000 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인건비 1인당 월 250 천원), 4년 차에는 120,000 천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다(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그러다가 1997년부터는 조합자율사업으로 전환되어 신규지원이 중단된 상태이다. 1999년 현재 축산발전기금 운용조합이 5개 조합(서울우유, 청주우유, 흥성낙협, 경북중앙낙협, 부산경남우유)이고 축산발전기금을 운용하지 않는 조합이 10

개 조합(전남동부낙협, 경남낙협, 황성축협, 아산축협, 서해낙협, 대구경북우유, 경북북부낙협, 천안낙협, 당진낙협, 경북낙협)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에는 1997 및 1998년 사업 추진 실적이 제시되어 있다. IMF 사태로 낙농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헬퍼사업 실적은 파출농가 수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연차별 축산발전기금 지원내역

(단위: 천원)

	'92	'93	'94	'95	'96	계
보 조	180,000	129,466	166,900	156,250	184,250	817,308
응 자	-	-	-	1,080,000	600,000	1,680,000
계	180,000	129,466	166,900	1,236,692	784,250	2,497,308

표 3-3 '97 및 '98년 헬퍼사업 추진 실적

구분	파출실적			젖소관리 두수			수수료 수입 (천원)	회원 농가수
	파출 농가수	파출 회수	파출 일수	착유우	기타	계		
'98	7,127	11,243	11,393	226,498	90,024	316,522	720,670	2,528
'97	7,240	11,153	11,115	207,592	87,402	294,994	695,346	1,918
'98/'97(%)	△1.6	100.8	102.5	109.1	103.0	107.3	103.6	131.8

<표 3-4>에는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의 변화(1992~1998년)가 제시되어 있다. 헬퍼요원 수는 1992년의 18명에서 1998년의 63명으로 증가하였고 이용농가 수는 1992년의 1,536가구에서 1998년의 7,127가구로 증가하

였다. 전체 낙농가 중에서 낙농헬퍼 이용농가(누적개념에서의)가 차지하는 비율(점유율)은 1992년의 5.5%에서 1998년의 45.5%로 증가하였다. 비누적개념에서의 낙농헬퍼 이용조합 회원 농가수는 2528가구로서 전체 낙농조합 회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6.1%(1998년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의 변화

범주	'92	'93	'94	'95	'96	'97	'98
헬퍼 요원 수	18	28	38	50	63	65	63
이용농가(A) (헬퍼 1인 당)	1,536 (85.3)	2,423 (86.5)	3,936 (103.6)	4,730 (94.6)	6,221 (98.7)	7,240 (111.4)	7,127 (113.1)
이용료수입(천원)	41,165	149,183	296,365	399,410	573,149	695,346	726,500
파출일수	1,303	4,205	6,898	8,037	10,340	11,115	11,393
전체 낙농가(B)	27,965	28,219	25,667	23,519	21,129	17,419	15,671
점유율(A/B)	5.5%	8.6%	15.3%	20.0%	29.0%	41.6%	45.5%

1.4. 사업자금 조달 및 운용 현황

낙농헬퍼사업을 위한 자금조달 금액은 총 1,445,407천원으로 이중 조합 부담금이 16.3%, 적립금 이자수입 32.8%, 기타보조 1.0%, 이용료수입 49.9%이나 축산발전기금을 지원받는 조합과 지원받지 않는 조합간의 비중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퍼사업을 위한 조달자금 운용액은 총 1,445,407천원으로 이중 헬퍼인건비 77.1%, 장비 구입 0.4%, 기타 사업비 22.0%로 대부분의 사업비용은 헬퍼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헬퍼사업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83%로 나타났다. 그러나 축산발전기금을 지원받은 조합의 재정자립도가 98%인데 반해서 축산발전기금을 지원받지 못한 조합의 재정자립도는 36%로 나타나 축발기금 지원과 이에 따른 조합·농가의 적립금 운용수익이 헬퍼사업의 자립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 문제점

낙농헬퍼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헬퍼 이용 시기가 집중되어 헬퍼인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회원들이 계절적으로 그리고 주말과 연휴에 헬퍼이용 신청을 하고 있어서 헬퍼 인력의 공급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것은 헬퍼 이용이 휴가와 여행 등 이용회원의 필요에 따른 신청으로 집중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헬퍼요원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하여 이용을 기피하는 문제가 있다. 헬퍼요원들이 기술, 교양, 교육 등 일정한 훈련과정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낙농가들이 이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즉, 아직도 헬퍼제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낙농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낙농헬퍼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헬퍼이용료 부담 때문에 낙농헬퍼제도의 이용을 기피하는 낙농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헬퍼이용 시 비용이 너무 높아 영세규모의 농가는 경제적 부담이 커서 이용을 기피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헬퍼사업의 적자로 인해서 이용료를 낮추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넷째, 헬퍼 이용회원의 확보가 미흡하다. 낙농헬퍼 이용 회원수가 전체 조합원의 16.1%(2,528명)에 불과하고 회원 1인 당 약 3.5개월에 1회 정도 밖에 낙농헬퍼를 이용하지 않고 있어서 사업의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다섯째, 헬퍼사업 조합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 이용료 수입 비중이 늘어나기는 했으나 자립수준에 못미치고 있다. 15개 조합의 평균 재정자립도('98년 기준)는 83%로 나타났으며 재정자립도가 50% 이하인 조합이 7개 조합(전남동부낙협, 경남낙협, 아산축협, 서해낙협, 천안낙협, 당진낙협, 경북낙협)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안정적인 헬퍼요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헬퍼요원에 대한 장기비전의 제시가 부재함으로 인해서 헬퍼요원을 확보하기

가 곤란하고 헬퍼요원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하며 헬퍼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더구나 낙농헬퍼를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문교육 기관이 아직 없다.

일곱째, 헬퍼사업 관련이 통일된 지침 및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그 결과 조합별 사업추진 형태의 차이로 체계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한 실정이다. 또한 사업주관 기관의 통합적 관리능력이 부족하고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2. 농협의 여성농업인 도우미제도

2.1. 목적

농협의 여성농업인 도우미제도는 여성농업인의 과중한 노동량의 경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의 젊은 후계인력을 육성하고 농촌사회 변화에 맞는 신 노동교환 및 상부상조의 모델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2. 사업내용

사업내용은 여성농업인이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일시적인 휴식, 질병, 출산, 교육 참가 등으로 가사노동이나 농업노동을 중단할 경우 이를 대행하는 것이다.

2.3. 추진방향

추진방향은 도별로 1개 시·군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한다. 그리고 군지부 또는 소재지 지역농협에 여성농업인 도우미 인력은행을 설치한다. 서비스 공급자로는 주부대학동창회원, 농가주부모임회원, 기타 지역여성 및 도시여성 등을 들 수 있으며, 공급자별 전문기술 또는 제공가능한 서비스 종류에 따라 구분·관리하도록 한다. 서비스 비용은 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무급 자원봉사 형태도 가능하도록 한다.

2.4. 수요자 및 공급자 확보

수요자 및 공급자는 도서관, 각종 상담소, 사회복지관 취업센터, 자원봉사자 기관 등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한다. 그리고 PC통신에 여성농업인 도우미방을 개설한다.

2.5. 경과

그 동안의 경과를 살펴보면, 1998년 12월 16일에 ‘여성농업인 도우미제도 도입 계획’이 만들어져서 관련 기관에 추진계획이 통보되고 시범 시·군이 선정되기 시작되었다. 1999년 3월 15일에는 ‘여성농업인 도우미제도 세부추진안’ 관련 기관에 통보되었으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무급으로 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6. 시범 시·군별 현황

시범 시·군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고양의 신도농협은 부녀회원으로 조직하여 시설채소 농가에 유급인력을 알선해주고 상례도우미가 초상집 음식, 제사상 등을 무료로 도와주고 있다. 강원도 철원의 동송농협은 농가주부 모임, 주부대학동창회, 부녀회 회원으로 봉사단을 결성하여 수지침, 미용, 농사일, 가사일 등을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충북 보은의 보은농협은 주부대학 동창회 회원들로 도우미봉사단 결성하여 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다. 전북 전주의 완주시군지부 농협은 주부대학 동창회, 부녀회원들로 도우미 희망자를 모집하여 무급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전남 목포의 신안·목포농협은 주부대학 동창회 회원으로 도우미 참여자를 모집하여 농촌일손돕기 및 가사노동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7. 문제점

농협의 여성농업인 도우미제도의 문제점으로는 ① 여성농업인 도우미 교

육 예산이 책정되지 못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② 도우미에 대한 전문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문도우미를 양성하지 못했으며, ③ 대다수의 사업들이 농촌일손돕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2.8. 향후 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에 여성농업인 도우미제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유급 도우미의 정착 방안을 마련한다. 시범사업 지역을 13개 시도지역별 1개군에서 9개도별 1개군으로 변경하여 선정하고 농림부의 시범지역과 연계한다. 그리하여 시범지역 농협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도우미 교육 예산을 책정한다. 이를 위해서 시범시군별로 10~15명의 도우미 신청자를 모집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도우미 이용에 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3. 농림부의 농가 도우미제도 도입계획

3.1. 사업목적

농림부의 농가 도우미제도는 여성농업인이 출산 전·후로 영농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될 경우 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하여 줌으로써 농가의 일시적 영농중단을 방지하여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은퇴한 농업경영인 및 이농한 농업인 등을 활용하여 고용을 재창출하며,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사업목적이 있다.

3.2. 사업내용

농림부의 농가 도우미제도는 여성농업인이 출산 등으로 농업노동을 일시적으로 중단 할 경우 도우미(helper)가 이를 대행하는 제도이다. 즉,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이 출산 전·후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산 전·후 60일 이내에서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에서는 도우미 이용에 따른 인건비 일부와 간식비 및 교통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각 시·도지사는 농가 도우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을 독려하고 점검해야 하며 언론매체, 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하겠다. 2000년부터는 각 시·도(9개)당 1개 시·군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3.3. 지원근거 및 추진 경위

지원근거로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여성농업인의 육성),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모성보호의 강화) 및 동법시행령 제2조를 들 수 있다.

추진경위는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97. 12, 여성특별위원회). 정부내 6개부처(농림부 포함)에 여성정책 담당관실을 신설하여 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 수립하였다('98. 8).

3.4.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은 출산 전·후의 여성농업인이다. 농업인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작물, 축산물, 임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지원기준은 도우미 인건비, 간식비, 교통비를 국고 50%, 자부담 50%로 한다.

3.5. 지원내용

1일(8시간) 도우미 이용료는 24 천원(인건비 19천원, 간식비 및 교통비 5천원)으로 하며 이 중에서 국고지원액을 12 천원(전체의 50%)으로 한다. 도우미 이용 일수는 연 60일 이내<근로기준법 제72조(산전·후 휴가) 준용>로 한다.

3.6. 집행기관 및 절차

사업시행의 주체는 국가(시행 : 시장·군수)이며 집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기본방침 수립, 사업자 확정 및 사업요령 작성(장관) → 세부사업계획 수립(시·도) → 사업시행(시·군) → 사업비 정산(장관).

3.7. 연차별 투자계획

2000년도에는 시범사업 실시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01년부터 전국농촌지역에서 농가 도우미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연차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2000년에 5억 9900만원, 2001년에 119억 9800만원, 2002년에 119억 9800만원, 2003년에 131억 9800만원, 2004년에 131억 9800만원이 투자될 예정이다(표 3-5 참조).

표 3-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8년까지	'99	2000	2001	2002	2003	2004
농가도우미사업	-	-	599	11,998	11,998	13,198	13,198

3.8. 2000년 예산 산출내역

사업량은 9개 시·군(각도 각1개 시·군)이고 사업비는 5억 99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도우미 인건비는 474 백만원($132 \times 70\% \times 19\text{천원} \times 60\text{일} \times 9\text{개소} \times 1/2$)이고, 도우미 간식비 및 교통비는 125 백만원($132\text{명} \times 70\% \times 5\text{천원} \times 60\text{일} \times 9\text{개소} \times 1/2$)이다. 그리고 1일 도우미 이용료는 2만 4천원이며 국비가 1만 2천원이고 자부담이 1만 2천원이다.

제 4 장

주요 외국의 농가 도우미제도

1. 독일의 농가 도우미제도

1.1. 독일의 농가도우미제도 도입 배경(Betriebs- und Haushaltshilfe)

독일의 농가 도우미제도는 농업경영과 가정도우미를 포함하는 제도로 농민 사회보험제도의 급여규정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독일의 농가도우미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1963년 “농촌사회정책으로서의 농가 가족을 위한 사회보장의 가능성”이라는 농촌문제 연구보고서(Kurt Noell)가 발표되면서 이 내용 속에서 농가 도우미가 새로운 노령보장 급여로 제안되었다.

그 후 1972년 10월 1일 농민노령 보조(농민연금)제도 중 “대행인력 또는 대행보상급여”로 법규가 제정되어 발효되기에 이르렀다. 이 규정은 동시에 농민질병보험 규정의 내용 중에 삽입되어 공통 적용되는 규정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농민연금과 농민질병보험에서는 사회보험간 중복급여 방지

및 통일된 급여수준을 견지하기 위한 제도정비가 이루어졌다. 1983년에는 농민사고보험에까지 확대되어 3대 사회보험(농민노령보험, 농민질병보험, 농민사고보험)에서 중요한 급여 항목으로 채택되어 제도화되었다.

독일의 농가 도우미제도가 노령농민 보조법(농민연금법)에서 먼저 도입된 것은 2차 대전 이후 급속한 산업개발정책으로 농가 인구가 크게 감소해 농업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당시에 이미 독일은 1957년부터 농업 구조개선정책을 추진하면서 65세 이상의 농민들에게는 영농으로부터 은퇴를 요구하는 강력한 농업경영이양연금 방식이 도입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65세 이후에도 농업경영을 계속하는 경우 연금지급이 보류되므로 대부분의 농민들은 경영이양 기간(퇴직기간)인 60세에서 65세 사이에 농업경영권을 포기하고 농장을 장기임대 하던가 매도하는 상황이었다. 이들 중 노동능력이 있고 기술도 있는 노인은 약간의 농업노동을 하고 싶어했고 그것을 통해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때마침 독일의 농가들도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원 중 누군가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 농장의 경영이 중단되는 문제를 겪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농민노령보조제도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농가도우미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독일의 농가도우미 제도에 있어서 도우미 인력의 대부분은 경영이양을 마치고 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이다. 이들은 도우미 활동을 통해 잡비를 벌고 노동의 즐거움도 누리는 은퇴농민들로서 대부분이 부업도우미 형태이다.

1.2. 독일의 농가 도우미 제도 내용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가도우미제도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노령농민 보조법 중 도우미 지원 규정>

- 요양원, 병원 등의 장기 요양치료 시는 3개월까지
- 기타의 질병치료는 6주까지

- 조기회복자의 보호와 기타 보호 시는 2주까지
농업경영 및 가사도우미인 농가도우미를 지원함

<질병보험법 중 도우미 지원규정>

- 질병 치료, 입원 요양치료 시는 4주까지
- 응급 처치는 4주까지
- 임신·출산의 경우는 분만 후 8주까지
- 조산 또는 쌍생아 분만 시는 분만 후 12주까지
- 농가 경영주 부부의 사망 시
아내가 사망하는 경우는 8주까지
경영주가 사망하는 경우는 6개월까지
- 경영주가 질병으로 입원, 요양 중 사망 시는 도합 12개월까지
농업경영 및 가사도우미인 농가도우미를 지원함

※ 도우미 이용에 관한 규정은 각 사회보험별로 각각의 사고 경우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으므로 복잡한 형태임

독일의 농가 도우미제도의 도우미 지원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왔다. 예를 들면, 과부의 경우 영농, 가사지원도우미가 1983년에 71일에서 1984년에는 180일로 연장되었다. 독일의 경우, 영농도우미와 가사도우미 이외에 마을도우미와 가족도우미가 있다. 마을도우미는 마을내의 도우미를 지칭하는데 마을 내에서 마을 사람을 도와주는 경우를 말한다. 가족도우미는 친인척 중의 도우미를 지칭하는데 친인척 중에서 도와주는 경우를 말한다. 독일의 경우, 모든 도우미는 도우미 양성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표 4-1>에는 도우미 이용비(시간 당 자부담액)가 제시되어 있다. 농장규모가 커지고 도우미 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시간 당 자기 부담액이 늘어나게 되어 있다.

도우미 이용 시 이용자가 스스로 구한 도우미도 이용할 수 있으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관리기구에 요청할 수도 있다. 도우미 이용실적은 매년

평균 90,000건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우미제도 주관 부서는 각각의 사회보험 관리기관으로 사회보험 급여 관리의 하나로서 시행하여 별 다른 불편은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도우미 신청은 각 사회보험사무소에서 가능하고 이를 총괄 운영하는 조직은 농업직업협동조합으로 3대 사회보험의 농가도우미 급여를 총괄 운영하고 있다.

표 4-1 도우미 이용료(1983)

시간당자부담액 : DM

범주	농장의 규모			
	5급규모 이하	5급규모 이상	10급규모 이상	10급규모 이하
7개월까지	2.00	3.00	4.00	5.00
11개월까지	3.00	4.00	5.00	6.00

2. 일본의 농가 도우미제도

2.1. 도입 및 발전 과정

일본의 농가 도우미제도는 낙농헬퍼제도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일본의 낙농 도우미제도는 농업 등에서 노동력을 교환하고 서로 돕는 전통적인 품앗이 조직에서 그 기초를 찾아볼 수 있다. 즉, 일본의 낙농헬퍼제도는 낙농조합들이 주체가 되어 관혼상제, 질병, 사고 등의 돌발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작업의 형태로 1966년도에 실시된 '순회착유사제도'에서 발전된 것이다. 순회착유사제도는 낙농협동조합이 전문 순회착유사를 고용하여 조합원 농가

를 순회하면서 휴일 확보나 사고 시에 대항작업을 하는 제도이다. 1975~1980년 기간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낙농헬퍼조직이 설립되어 낙농헬퍼 제도가 정착되었다. 1990년 12월에 전국 단위의 「낙농헬퍼전국협회」가 발족되어 낙농헬퍼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그리고 개별 낙농가에서 헬퍼 요원을 이용하는 목적을 살펴보면, 설립초기에는 관혼상제,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해외연수, 여행 등의 휴일 확보를 위한 이용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2.2. 일본 낙농헬퍼제도의 현황

2.2.1. 낙농헬퍼 이용조합 수의 변화

<표 4-2>에 낙농헬퍼 이용조합 수의 변화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낙농헬퍼 이용조합은 1989년에 146개이던 것이 1997년에 392개까지 증가했다가 1998년에 38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에는 활동 형태별 낙농헬퍼 이용조합 수가 제시되어 있다. 이용조합의 활동형태는 정기적인 휴일에만 대응하는 정기형이 46.7%, 부정기형이 11.2%, 정기적 및 부정기적(긴급 시) 이용 모두에 대응하는 병용형이 42.1%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업낙농지대인 북해도는 병용형(80.6%)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조합의 조직형태는 낙농가들이 스스로 조직한 임의조합이 대부분(약 90%)이고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대략 10%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용조합 활동범위 내의 낙농가 총 호수는 32,389호인데 이중에서 이용조합 가입 호수는 20,337호로 가입율은 62.8%로 나타났다. 1998년 8월 현재 전체 낙농가 중에서 차지하는 낙농헬퍼 이용조합원 수의 비율은 54.4%이고 1개 이용조합 당 평균 조합원수는 45.6호로 나타났다.

표 4-2 낙농헬퍼 이용조합 수의 변화.

지역	1989년	1990년	1993년	1996년	1997년	1998년
전국	146	194	365	385	392	385
북해도	10	22	73	82	89	93
도·부·현	136	172	292	303	303	292

자료: 사단법인 낙농헬퍼전국협회, 「낙농도우미이용조합실태 조사 결과」, 1998년.

표 4-3 활동 형태별 낙농헬퍼 이용조합 수

단위 : 수, %

지역	정기형	부정기형	병용형	합계
전국	180(46.7)	43(11.2)	162(42.1)	385(100.0)
북해도	16(17.2)	2(2.2)	75(80.6)	93(100.0)
도·부·현	164(56.2)	41(14.0)	87(29.8)	292(100.0)

자료: 사단법인 낙농헬퍼전국협회, 「낙농도우미이용조합실태 조사 결과」, 1998년.

2.2.2. 낙농헬퍼 이용 현황

최근 1년 사이에 낙농헬퍼를 정기적으로 이용한 농가의 1호당 연간 평균 이용일수는 12.5일이고 관혼상제, 병, 사고 등과 같은 갑작스런 일로 인한 부정기적인 이용은 연간 1호당 4.9일로 나타났다. 낙농헬퍼의 정기적 이용은 여전히 월 1회 이하의 이용이 주되지만 정기이용 농가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2.3. 낙농헬퍼의 활동 상황

<표 4-4>에는 낙농헬퍼 요원 수가 제시되어 있다. 전국의 낙농헬퍼 수는

2,497명인데 이중에서 전임헬퍼가 1,125명이고 임시헬퍼가 1,372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개 조합 당 평균 헬퍼 수는 6.5명으로 이중에서 전임헬퍼가 2.9인이고 임시헬퍼가 3.6인으로 나타났다.

표 4-4 낙농헬퍼 요원 수

단위 : 명, %

지역	전임헬퍼	임시헬퍼	합계
전국	1,125(45.1)	1,372(54.9)	2,497(100.0)
북海道	337(36.2)	593(63.8)	930(100.0)
도·부·현	788(50.3)	779(49.7)	1,567(100.0)

자료: 사단법인 낙농헬퍼전국협회, 「낙농도우미이용조합실태 조사 결과」, 1998년.

2.2.4. 낙농헬퍼 관련 정책

일본의 낙농헬퍼 관련 정책으로는 “낙농헬퍼사업 원활화 대책 사업”, “낙농헬퍼사업 안정 특별대책 사업”, “낙농헬퍼조직 경영체제 강화 특별사업”, “낙농헬퍼 상병 시 이용 원활화 특별대책 사업”, “낙농헬퍼 이용 촉진 특별대책 사업” 등이 있다.

가. 낙농헬퍼사업 원활화 대책 사업

이 사업은 전국 단계에서는 ① 헬퍼조직의 육성 및 정착을 위한 보급·계몽, ② 신규 헬퍼 요원의 양성 연수 실시 및 연수 참가자에 대한 기술습득자금의 대출, ③ 헬퍼 요원 해외연수의 기획·조정, ④ 헬퍼 작업 중에 발생한 상해를 보상하는 보험가입의 촉진 등을 들 수 있다.

도도부현 단계에서는 ① 이용조합 상호의 광역적인 활동조정 실시, ② 헬퍼 요원을 확보하기 위한 요원 모집 및 요원에 관한 정보 제공, ③ 기존 헬퍼 요원의 기술향상 연구 및 해외연수 실시, ④ 이용조합의 조성 등을 들 수 있다.

이용조합 단계에서는 ① 헬퍼 요원의 모집, ② 헬퍼 작업 중에 일어난 사고

나 손해에 대한 보상 촉진, ③ 헬퍼 사업량의 안정화를 위한 이용 조정, ④ 헬퍼 업무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 기기의 도입 등이다. 이 사업을 위해서 조성된 기금은 7,000 백만 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낙농헬퍼사업 안정 특별대책 사업

이 특별대책의 중요 사업으로는 ‘낙농헬퍼 연수 특별 조성 사업’과 ‘낙농헬퍼 양성연수 실시 정비사업’을 들 수 있다.

낙농헬퍼 연수 특별 조성사업은 낙농헬퍼전국협회가 행하는 기초적인 연수를 끝낸 낙농헬퍼 요원에 대해서 실천적인 사양관리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해 헬퍼 업무를 통한 실천연수 시에 연수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낙농헬퍼 양성연수 실시 정비사업은 새로운 기술 및 생산방식의 진전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헬퍼를 육성하기 위한 연수시설 및 기계 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 낙농헬퍼조직 경영체제 강화 특별사업

이 사업은 낙농헬퍼제도가 정기이용이 보급·정착되고 안정적인 헬퍼이용 환경이 정비되어질 때까지 당분간 이용조합 운영경비에 대하여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도도부현 단계의 낙농헬퍼사업기금에 대해서는 그 재정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것이다.

라. 낙농헬퍼 상병 시 이용 원활화 특별대책 사업

이 특별대책의 주요 사업으로는 ‘낙농헬퍼 상병 시 이용 시범 실천사업’과 ‘낙농헬퍼 상병 시 이용조사 검토사업’을 들 수 있다.

낙농헬퍼 상병 시 이용 시범 실천사업은 낙농헬퍼 이용조합 가입농가의 기부로 이루어진 적립금으로 상병 시에 헬퍼이용료를 경감해 주는 호조(互助) 제도를 실시하는 이용조합에 대해서는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낙농헬퍼 상병 시 이용조사 검토사업은 상병 시 헬퍼 이용 지원제도인 호

조제도를 원활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낙농헬퍼 상병 시 이용 시범 실천사업에 관한 실태파악,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등을 수행한다.

마. 낙농헬퍼 이용 촉진 특별대책 사업

이 특별대책의 주요 사업으로는 ‘낙농헬퍼 취업 희망자의 조기 확보’와 ‘낙농헬퍼 요원의 안정확보’를 들 수 있다.

우수한 낙농헬퍼 취업 희망자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농업(전문)대학 등을 졸업한 후에 낙농헬퍼로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재학중의 수확자금을 월 5만엔씩 2년간 지원해준다. 이 장학금제도는 수혜자가 학교를 졸업한 후에 3년간 의무적으로 낙농헬퍼로 근무하면 장학금의 상환을 면제해 준다. 그리고 낙농헬퍼 요원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낙농헬퍼전국협회의 헬퍼 모집, 상담활동, 헬퍼 알선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바. 산모헬퍼제도

산모헬퍼제도는 가족노동력을 이용하는 전업 낙농가의 주부가 출산을 할 때 헬퍼를 이용할 경우 산전, 산후 3일간 헬퍼 이용 요금의 절반을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산전, 산후에 낙농가의 주부가 안심하고 조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마든 것으로 헬퍼의 이용료는 착유 두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3. 주요 외국의 농가 도우미제도 비교

<표 4-5>에는 주요 외국의 농가 도우미제도가 간략하게 비교되어 있다.

첫째, 농가 도우미제도의 시행주체는 대체로 협동조합이나 민간단체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농가 도우미제도의 시행주체가 미국은 민간단체 또는 소규모 회사이고, 덴마크는 농업자단체 연합위원회 또는

표 4-5 주요 외국의 농가 도우미제도

국 가	시행주체	이용자격	서비스시기	서비스내용	기 타
독 일	정부, 민간 서비스단체 (교회, 조합, 복지센터)	경영주와 배우자	질병, 출산, 사고, 사망 등 긴급수요시와 휴가, 교육, 훈련시	농작업, 가사	- 질병 보험급여로 임신 출산과 질병 요양시 3개월까지 - 경영주 사망시는 6개월까지 지원 교육, 훈련, 휴가 3주까지
미국	민간단체, 소규모 회사	제한없음	휴가, 경조사, 질병 등	농작업	Farm Sitter Service (휴가시 농장을 돌보아 줌)
덴마크	농업자단체 연합위원회, 독립단체	제한없음	질병, 출산, 훈련, 휴가	농작업	- 회원출자+정부보조 - 대행작업원 자격증제도
프랑스	농업자조합, 비농업자는 회사 형태	제한없음	출산, 훈련참가 등	농작업	- 사회보장제도와 연계 - 임신시 대행료 전액 정부보조
아일랜드	협동조합	제한없음 (비농가도 가능)	농번기 과잉작업, 질병, 휴가, 출산	농작업, 가사	- 농가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거의 이용하지 않고 비농가에서 주로 이용
룩셈부르크	농업인단체 '노동교환과 상호부조 서클'	회원 가족	질병, 사망, 재해, 입원, 출산, 과도한 작업부담	농작업, 가사	- 단체운영자금 일부 정부지원
네덜란드	대행서비스 전국조직	단체 회원	질병, 재해, 휴가, 훈련 등	농작업, 가사 (단, 농작업 없이 가사만은 불가능)	- 농업헬퍼는 단순 노동자, 콤비 워크, 헬퍼, 숙련 헬퍼, 농장 관리자로 구분함 - 질병, 재해 등의 경우 정부 보조 - 헬퍼에 대한 농업훈련 실시
영 국	민간단체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 대행료가 비쌌음 - 지방자치단체가 가사부조서비스에 대한 법적 책임있으나 주로 환자, 신체장애자, 고령자 등을 위한 것임
일 본	협동조합 민간단체	제한없음	제한없음	낙농 관련 농작업	- 도우미 상병시 이용 원활화 특별 대책, 2000년 4월 간호보험 실시 예정(간병, 가사 분야), 헬퍼를 위한 보험제도 - 정부 보조금을 바탕으로 낙농헬퍼 전국협회의 기금을 조성함

독립단체이며, 프랑스는 농업자조합 또는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독

일은 정부와 민간단체가 도우미제도의 시행주체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다수 국가에서는 이용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독일은 경영주와 배우자, 룩셈부르크는 회원 가족, 네덜란드는 단체회원들에게만 도우미 이용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셋째, 서비스시기는 질병, 출산, 경조사, 재해 등과 같은 부정기적인 서비스에서 주말 휴식 및 정기휴가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우미의 서비스시기의 제한이 계속 완화되고 있다.

넷째, 도우미의 서비스내용이 나라마다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농작업만 서비스를 받는 국가는 미국, 덴마크, 그리고 프랑스 등이고 농작업과 가사를 함께 서비스를 받는 국가는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도우미 서비스내용에 제한이 없는데 농작업은 민간단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사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금까지는 낙농 관련 농작업을 중심으로 도우미서비스가 제공되어 왔으나 2000년 4월에 간호보험이 실시되면 간병, 가사 분야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으로 있다.

다섯째, 농가 도우미제도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 제도의 활성화 여부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농가 도우미제도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보조금)을 하고 있는 국가로는 독일, 덴마크,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일본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덴마크의 경우, 농가 도우미제도가 196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으나 1981년부터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도우미제도에 대한 덴마크의 정부 보조금제도로는 병, 사고, 출산 등의 경우에 대한 헬퍼이용료 보조, 농업인의 교육·연수 참가 시 보조, 헬퍼 요원의 교육 및 연수에 대한 보조 등이 있다. 일본의 경우, 1990년에 낙농헬퍼 원활화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70억엔의 기금을 출연함으로써 낙농헬퍼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농가 도우미제도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별로 없는 국가로는 미국, 아일랜드, 영국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농가 도우미제

도에대한 정부보조금이 없는 이 국가들에서는 농가 도우미제도가 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5 장

농가 도우미제도에 관한 여론조사

1. 여론조사 개요

농가 도우미제도에 관한 여론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 통신원 및 통신원 부인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표 5-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우편 설문조사의 설문지 발송 수는 통신원 500명 및 통신원 부인 500명으로 총 1000명이었다. 설문에 응답하여 설문지를 회송한 경우는 통신원이 286명, 통신원 부인이 256명으로 총 542명으로 나타났다. 회수율은 통신원이 57.2%, 통신원 부인이 51.2%로 전체적으로는 54.2%로 나타났다.

표 5-1 여론조사 규모 및 응답 비율

구 분	발송 수	회송 수	회수율
통신원	500	286	57.2%
통신원 부인	500	256	51.2%
합 계	1000	542	54.2%

2.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2.1. 주요 소득원을 기준으로 본 응답자들의 분포

<표 5-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주요 소득 원을 기준으로 본 응답자들의 분포는 논 농가 196명(36.2%), 밭 농가 112명(20.7%), 과수 농가 113명(20.8%), 축산 농가(부 소득 원 포함) 121명(22.3%)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5-2 주요 소득원을 기준으로 본 응답자들의 분포

응답범주	빈도	백분비(%)
논 농가	196	36.2
밭 농가	112	20.7
과수 농가	113	20.8
축산 농가(부 소득 원 포함)	121	22.3
계	542	100.0

2.2. 응답자들의 연령 분포

<표 5-3>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응답자들의 연령 분포는 20대가 5명(0.9%), 30대가 46명(8.5%), 40대가 162명(30.1%), 50대가 135명(25.1%), 60대가 168명(31.1%), 70대 이상이 23명(4.3%)이고 평균 연령은 53.3세로 나타났다.

표 5-3 응답자들의 연령분포

연령 분포	빈도(명)	백분비(%)
20대	5	0.9
30대	46	8.5
40대	162	30.1
50대	135	25.1
60대	168	31.1
70대 이상	23	4.3
계	539	100.0

* 무응답 = 3명; 평균 연령 = 53.3세

2.3. 응답자들의 학력

<표 5-4>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응답자들의 학력은 초등(국민)학교 졸업 이하가 111명(20.5%), 중학교 졸업이 177명(32.8%), 고등학교 졸업이 211명(39.1%), 전문대 졸업 이상이 41명(7.6%)으로 나타났다.

표 5-4 응답자들의 학력

학력	빈도(명)	백분비(%)
무학	5	0.9
한학(서당)	1	0.2
초등(국민)학교 졸업	105	19.4
중학교 졸업	177	32.8
고등학교 졸업	211	39.1
전문대 졸업	16	3.0
대학 졸업 이상	25	4.6
계	540	100.0

* 무응답 = 2명

2.4. 가족 수

<표 5-5>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응답자들의 가족 수는 2인이 137명(25.4%), 3인이 100명(18.6%), 4인이 106명(19.7%), 5인이 85명(15.8%), 6인 이상이 111명(20.5%)이고 평균 가족 수는 3.98명으로 나타났다.

표 5-5 가족 수

연령 분포	빈도(명)	백분비(%)
2인	137	25.4
3인	100	18.6
4인	106	19.7
5인	85	15.8
6인 이상	111	20.5
계	539	100.0

무응답 = 3명; 평균 가족 수 = 3.98명

2.5. 영농 후계자 유무

<표 5-6>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귀하의 뒤를 이어 농사를 지을 자녀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있다’는 경우가 81명(15.1%), ‘없다’는 경우가 201명(37.4%), ‘자녀의 의사에 맡긴다’는 경우가 256명(47.6%)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영농 후계자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영농 후계자 유무

영농 후계자 유무	빈도(명)	백분비(%)
있다	81	15.1
없다	201	37.4
자녀의 의사에 맡긴다	256	47.5
계	538	100.0

* 무응답 = 4명

2.6. 영농참여 정도

<표 5-7>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귀하께서는 농사일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까?”라는 영농참여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이 내가 한다’는 경우가 418명(77.4%), ‘주된 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일부만 거드는 정도이다’는 경우가 104명(19.3%), ‘과거에는 농사일에 참여했으나 현재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경우가 17명(3.1%), ‘과거에도 농사일에 참여하지 않았고 현재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1명(0.2%)로 나타났다.

표 5-7 영농참여 정도

영농참여 정도	빈도(명)	백분비(%)
대부분 내가 한다	418	77.4
주된 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일부만 거드는 정도이다	104	19.3
과거에는 농사일에 참여했으나 현재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17	3.1
과거에도 농사일에 참여하지 않았고 현재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1	0.2
계	540	100.0

* 무응답 = 2

2.7. 영농경력

<표 5-8>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영농경력은 ‘10년 이하’가 14명(2.6%), ‘11년~20년 이하’가 140명(26.1%), ‘21년~30년 이하’가 177명(33.0%), ‘31년~40년 이하’가 142명(26.4%), ‘41년 이상’이 64명(11.9%)이고 평균 영농 경력은 29.2년으로 나타났다.

표 5-8 영농 경력

영농 경력(년)	빈도(명)	백분비(%)
10년 이하	14	2.6
11~20년 이하	140	26.1
21~30년 이하	177	33.0
31~40년 이하	142	26.4
41년 이상	64	11.9
계	537	100.0

* 무응답 = 5명; 평균 영농경력 = 29.2년

2.8. 농외 사업 또는 취업

<표 5-9>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귀하는 농사일 이외에 다른 사업을 운영하거나 직장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농외 사업 또는 취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예’가 97명(18.1%), ‘아니오’가 438명(81.9%)으로 나타났다. 농외 사업 또는 취업은 전통식품 제조, 농산물 판매, 협동조합 또는 농업 관련 단체의 직원, 음식점, 잡화점, 운수업, 청소, 경비, 막노동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농외 사업 또는 취업

농외 사업 또는 취업 유무	빈도(명)	백분비(%)
예	97	18.1
아니오	438	81.9
계	535	100.0

* 무응답 = 7명

2.9. 지난 해 연간소득

<표 5-10>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귀댁의 지난해 연간소득은 대략 얼마나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500만원 미만’이 32가구(6.0%), ‘500~999만원’이 82가구(15.3%), ‘1000~1499만원’이 119가구(22.2%), ‘1500~1999만원’이 90가구(16.8%), ‘2000~2499만원’이 72가구(13.4%), ‘2500~2999만원’이 44가구(8.2%), ‘3000~3499만원’이 31가구 (5.8%), ‘3500만원 이상’이 66가구 (12.3%)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의 60.3%가 연간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고 응답자들의 18.1%가 연간소득이 3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가구는 114가구(21.3%)인 것으로 밝혀졌다.

표 5-10 지난해 연간소득

연간소득	빈도(명)	백분비(%)
500만원 미만	32	6.0
500~999만원	82	15.3
1000~1499만원	119	22.2
1500~1999만원	90	16.8
2000~2499만원	72	13.4
2500~2999만원	44	8.2
3000~3499만원	31	5.8
3500만원 이상	66	12.3
계	536	100.0

* 무응답 = 6명

3. 농가 도우미제도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

3.1. 현재 주로 도움을 청하는 대상

<표 5-11>에는 “경조사, 출산, 교육참가, 질병, 급한 개인용무 등으로 농작업이나 가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할 경우에 귀하는 주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응답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즉, 농작업이나 가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할 경우 주로 도움을 청하는 대상은 ‘가족’이 219명(40.9%), ‘이웃’이 123명(22.9%), ‘친척’이 97명(18.1%), ‘부탁할 만한 마땅한 사람이 없음’이 70명(13.1%), ‘작목반이나 계 등의 회원이나 친구’가 22명(4.1%), ‘기타’가 5명(0.9%)으로 나타났다.

표 5-11 도움을 청하는 대상자

주로 도움을 청하는 대상자	빈도(명)	백분비(%)
가족	219	40.9
친척	97	18.1
이웃	123	22.9
작목반, 계 등의 회원이나 친구	22	4.1
부탁할 만한 마땅한 사람이 없음	70	13.1
기타	5	0.9
계	536	100.0

* 무응답 = 6명

3.2. 농가 도우미제도 인지 정도

<표 5-12>에는 “귀하는 농가 도우미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응답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농가 도우미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가 253명(47.3%), ‘들어본 적은 있으나 그 내용은 모른다’가 206명(38.5%), ‘들어본 적이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62명(11.6%),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가 14명(2.6%)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응답자들이(85.8%) 농가 도우미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들어본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농가 도우미제도 인지 정도가 대체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가 도우미제도 인지 정도에 관한 각 변인별 교차표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 소득원별로 비교해보면, 농가 도우미제도를 인지하는 비율이 축산 농가(62.2%), 논 농가(53.6%), 밭 농가(48.6%), 과수 농가(45.0%) 순서로 나타났다(표 5-13 참조). 즉, 축산 농가가 농가 도우미제도를 인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것은 기존의 낙농헬퍼제도로 인한 영향이라고 보여

진다.

표 5-12 농가 도우미제도 인지 정도

농가 도우미제도 인지 정도	빈도(명)	백분비(%)
들어본 적이 없다	253	47.3
들어본 적은 있으나 그 내용은 잘 모른다	206	38.5
들어본 적이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62	11.6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14	2.6
계	535	100.0

* 무응답 = 7명

표 5-13 주요 소득원별 농가 도우미제도 인지 정도

단위 : 명, %

응답 범주	논 농가	밭 농가	과수 농가	축산 농가	계
들어본 적 없다	90(46.4)	57(51.4)	61(55.0)	45(37.8)	253(47.3)
들어본 적 있다	104(53.6)	54(48.6)	50(45.0)	74(62.2)	282(52.7)
계	194(100.0)	111(100.0)	111(100.0)	119(100.0)	535(100.0)

$$\chi^2 = 7.70; DF = 3; P < .05$$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농가 도우미제도를 인지하는 비율이 40대 이하(61.3%), 50대(47.4%), 60대 이상(47.1%) 순서로 나타났다. 즉, 젊을수록 농가 도우미제도를 인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5-14 참조).

표 5-14 연령별 농가 도우미제도 인지 정도

단위 : 명, %

응답 범주	40대 이하	50대	60대 이상	계
들어본 적 없다	82(38.7)	70(52.6)	99(52.9)	251(47.2)
들어본 적 있다	130(61.3)	63(47.4)	88(47.1)	281(52.8)
계	212(100.0)	133(100.0)	187(100.0)	532(100.0)

$\chi^2 = 10.22; DF = 2; P < .01$

농외 사업 또는 취업 유무별로 비교해보면, 농외 사업 또는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62.5%) 그렇지 않은 경우(50.9%)보다 농가 도우미제도를 인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15 참조).

표 5-15 농외취업 유·무별 농가 도우미제도 인지 정도

단위 : 명, %

응답 범주	농외 취업	농외 미취업	계
들어본 적 없다	36(37.5)	212(49.1)	248(47.0)
들어본 적 있다	60(62.5)	220(50.9)	280(53.0)
계	96(100.0)	432(100.0)	528(100.0)

$\chi^2 = 4.22; DF = 1; P < .05$

3.3. 농가 도우미제도의 필요성 인지

<표 5-16>에는 농가 도우미제도가 우리 나라에서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응답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꼭 필요하다’가 166명(31.0%), ‘필요하다’가 295명(55.0%), ‘필요 없다’가 36명(6.7%), ‘잘 모르겠다’가 39명(7.3%)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들의 86.0%가 농가 도우미제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6 농가 도우미제도의 필요성 인지

농가 도우미제도의 필요성	빈도(명)	백분비(%)
꼭 필요하다	166	31.0
필요하다	295	55.0
필요 없다	36	6.7
전혀 필요 없다	0	
잘 모르겠다	39	7.3
계	536	100.0

* 무응답 = 6명

농가 도우미제도의 필요성 인지에 관한 각 변인별 교차표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농 후계자 유·무별로 비교해보면, 영농 후계자가 있는 농가(47.5%)가 농가 도우미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농 후계자가 있을수록 농가 도우미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5-17 참조).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젊을수록 농가 도우미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18 참조).

표 5-17 영농 후계자 유·무별 농가 도우미제도의 필요성 인지

단위 : 명, %

응답 범주	있다	없다	자녀 의사에 맡긴다	계
꼭 필요하다	38(47.5)	57(28.7)	69(27.3)	164(30.8)
필요하다	34(42.5)	116(58.3)	144(56.9)	294(55.3)
필요 없다	2(2.5)	12(6.0)	22(8.7)	36(6.8)
잘 모르겠다	6(7.5)	14(7.0)	18(7.1)	38(7.1)
계	80(100.0)	199(100.0)	253(100.0)	532(100.0)

$\chi^2 = 15.09$; DF = 6; P < .05

표 5-18 연령별 농가 도우미제도의 필요성 인지

단위 : 명, %

응답 범주	40대 이하	50대	60대 이상	계
꼭 필요하다	81(38.2)	37(27.6)	46(24.5)	164(30.7)
필요하다	112(52.8)	78(58.2)	105(55.9)	295(55.2)
필요 없다	11(5.2)	7(5.2)	18(9.5)	36(6.8)
잘 모르겠다	8(3.8)	12(9.0)	19(10.1)	39(7.3)
계	212(100.0)	134(100.0)	188(100.0)	534(100.0)

$\chi^2 = 16.73$; DF = 6; P < .01

3.4. 농어민 복지증진에 대한 기여도

<표 5-19>에는 “귀하께서는 농가 도우미제도가 농어민들의 복지증진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145명(27.1%),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323명(60.3%),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38명(7.1%),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6명(1.1%), ‘잘 모르겠다’ 23명(4.5%)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응답자들의 87.4%가 농가 도우미제도가 농어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5-19 농가 도우미제도의 농어민 복지증진에 대한 기여도

농어민 복지증진에 대한 기여도	빈도(명)	백분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145	27.1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323	60.3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38	7.1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6	1.1
잘 모르겠다	24	4.5
계	536	100.0

* 무응답 = 6명

농가 도우미제도의 농어민 복지증진에 대한 기여도에 관한 각 변인별 교차표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농가 도우미제도가 농어민들의 복지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20 참조).

학력별로 비교해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농가 도우미제도가 농어민들의 복지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표 5-20 연령별 농가 도우미제도의 농어민 복지증진 기여도

단위 : 명, %

응답 범주	40대 이하	50대	60대 이상	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75(35.4)	28(20.9)	41(21.8)	144(27.0)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120(56.6)	89(66.4)	113(60.1)	322(60.3)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12(5.7)	11(8.2)	15(8.0)	38(7.1)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2(0.9)	1(0.8)	3(1.6)	6(1.1)
잘 모르겠다	3(1.4)	5(3.7)	16(8.5)	24(4.5)
계	212(100.0)	134(100.0)	188(100.0)	534(100.0)

$\chi^2 = 23.61$; DF = 8; P < .01

표 5-21 학력별 농가 도우미제도의 농어민 복지증진 기여도

단위 : 명, %

응답 범주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이상	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19(17.3)	39(22.4)	87(34.6)	145(27.1)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72(65.4)	112(64.4)	138(55.0)	322(60.2)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8(7.3)	11(6.3)	19(7.6)	38(7.1)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3(2.7)	1(0.6)	2(0.8)	6(1.1)
잘 모르겠다	8(7.3)	11(6.3)	5(2.0)	24(4.5)
계	110(100.0)	174(100.0)	251(100.0)	535(100.0)

$\chi^2 = 22.92$; DF = 8; P < .01

농가 도우미제도가 농어민들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21 참조).

연간소득별로 비교해 보면, 연간소득이 높을수록 농가 도우미제도가 농어민들의 복지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22 참조).

표 5-22 연간소득별 농가 도우미제도의 농어민 복지증진 기여도

단위 : 명, %

응답 범주	999만원 이하	1000~1999만원	2000~2999만원	3000만원 이상	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23(20.5)	49(23.6)	39(33.9)	34(35.4)	145(27.3)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68(60.7)	128(61.5)	69(60.0)	53(55.2)	318(59.9)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9(8.0)	18(8.7)	4(3.5)	7(7.3)	38(7.2)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4(3.6)	0(0)	1(0.9)	1(1.0)	6(1.1)
잘 모르겠다	8(7.2)	13(6.2)	2(1.7)	1(1.0)	24(4.5)
계	112(100.0)	208(100.0)	115(100.0)	96(100.0)	531(100.0)

$$\chi^2 = 26.46; DF = 12; P < .01$$

3.5. 농가 도우미가 가장 필요한 경우

<표 5-23>에는 “귀택에서 농가 도우미가 가장 필요한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몸을 다치거나 병이 난 때’ 286명(53.6%), ‘갑자기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생긴 경우’ 93명(17.6%), ‘결혼식, 장례식, 회갑과 같은 경조사에 참가하는 경우’ 163명(11.8%), ‘출산, 산전, 산후에 산모의 건강을 돌보는 경우’ 24명(4.5%), ‘영농교육, 직업훈련, 연수 등에 참가하는 경우’ 22명(4.1%) 등의 순서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3 농가 도우미가 가장 필요한 경우

농가 도우미제도가 가장 필요한 경우	빈도(명)	백분비(%)
결혼식, 장례식, 회갑과 같은 경조사에 참가하는 경우	163	11.8
영농교육, 직업훈련, 연수 등에 참가하는 경우	22	4.1
출산, 산전, 산후에 산모의 건강을 돌보는 경우	24	4.5
정기휴가나 여행을 갈 경우	10	1.9
주말에 휴식을 취하는 경우	3	0.6
몸을 다치거나 병이 난 경우	286	53.6
갑자기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생길 경우	93	17.6
각종 회의, 모임 등에 참석하는 경우	7	1.3
기타	26	4.9
계	536	100.0

* 무응답 = 8명

농가 도우미제도가 가장 필요한 경우에 관한 각 변인별 교차표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몸을 다치거나 병이 난 경우’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강조하고, ‘갑자기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생길 경우’ 및 ‘영농교육, 직업훈

련, 연수 등에 참가하는 경우'는 젊은 층일수록 더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4 참조).

표 5-24 연령별 농가 도우미제도가 가장 필요한 경우

단위 : 명, %

응답 범주	40대 이하	50대	60대 이상	계
결혼식, 장례식, 회갑과 같은 경조사에 참가하는 경우	32(15.2)	10(7.4)	21(11.3)	63(11.8)
영농교육, 직업훈련, 연수 등에 참가하는 경우	14(6.6)	5(3.7)	3(1.6)	22(4.1)
출산, 산전, 산후에 산모의 건강을 돌보는 경우	12(5.7)	5(3.7)	7(3.8)	24(4.5)
정기휴가나 여행을 갈 경우	3(1.4)	2(1.5)	5(2.7)	10(1.9)
주말에 휴식을 취하는 경우	2(0.9)	0(0)	1(0.5)	3(0.6)
몸을 다치거나 병이 난 경우	100(47.4)	79(58.5)	106(57.0)	285(53.6)
갑자기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생길 경우	43(20.4)	22(16.3)	27(14.5)	92(17.3)
각종 회의, 모임 등에 참석하는 경우	0(0)	5(3.7)	2(1.1)	7(1.3)
기타	5(2.4)	7(5.2)	14(7.5)	26(4.9)
계	211(100.0)	135(100.0)	186(100.0)	532(100.0)

$\chi^2 = 32.45$; DF = 16; P < .01

3.6. 산모도우미의 이용가능 기간

<표 5-25>에는 “출산, 산전, 산후에 산모의 건강을 돌봐주는 산모도우미의 경우, 이용가능한 기간을 어느 정도로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출산 전후 1개월’이 224명(44.1%), ‘출산 후 1개월’이 204명(40.2%), ‘출산 후 2개월’이 43명(8.5%)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의 84.3%가 바람직한 ‘산모도우미의 이용가능 기간’으로 1개월 정도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의견으로는 출산 전후 1~2주일을 원하는 응답자가 몇 명 있었다.

표 5-25 산모도우미의 이용가능 기간

산모도우미의 이용가능 기간	빈도(명)	백분비(%)
출산 전·후의 1개월	224	44.1
출산 후 1개월	204	40.2
출산 후 2개월	43	8.5
출산 후 3개월	7	1.4
기타	30	5.9
계	508	100.0

* 무응답 = 34명

산모도우미의 이용가능 기간에 관한 각 변인별 교차표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간소득별로 비교해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산모도우미의 이용가능 기간을 더 길게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5-26 참조).

표 5-26 연간소득별 산모도우미의 이용가능 기간

단위 : 명, %

응답 범주	999만원 이하	1000~ 1999만원	2000~ 2999만원	3000만원 이상	계
출산 전·후의 1개월	43(39.8)	92(47.2)	46(43.0)	39(41.9)	220(43.7)
출산 후 1개월	50(46.3)	84(43.1)	37(34.6)	32(34.4)	203(40.4)
출산 후 2개월	4(3.7)	11(5.6)	14(13.1)	14(15.0)	43(8.5)
출산 후 3개월	1(0.9)	2(1.0)	2(1.9)	2(2.2)	7(1.4)
기타	10(9.3)	6(3.1)	8(7.5)	6(6.5)	30(6.0)
계	108(100.0)	195(100.0)	107(100.0)	93(100.0)	503(100.0)

$\chi^2 = 22.12$; DF = 12; P < .05

3.7. 가장 필요로 하는 농가 도우미

<표 5-27>에는 “귀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농가 도우미는 어떤 것입니까?”에 대한 응답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인 농사일을 대신해 주는 영농도우미’ 233명(43.7%), ‘전문적인 농사일을 대신해 주는 영농도우미’ 112명(21.0%),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건강관리를 대신해 주는 간병도우미’ 102명(19.1%), ‘출산, 산전, 산후에 산모의 건강관리를 대신해 주는 산모도우미’ 30명(5.6%), ‘취사, 청소 등의 가사활동을 대신해 주는 가사도우미’ 20명(3.8%) 등으로 나타났다. 즉, 가장 필요로 하는 농가 도우미는 영농도우미 및 간병도우미인 것으로 밝혀졌다.

표 5-27 가장 필요로 하는 농가 도우미

가장 필요로 하는 농가 도우미	빈도(명)	백분비(%)
일반적인 농사일을 대신해 주는 영농도우미	233	43.7
전문적인 농사일을 대신해 주는 영농도우미	112	21.0
출산, 산전, 산후에 산모의 건강관리를 대신해 주는 산모도우미	30	5.6
취사, 청소 등의 가사활동을 대신해 주는 가사도우미	20	3.8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건강관리를 대신해 주는 간병도우미	102	19.1
기타	13	2.4
필요 없음	23	4.3
계	533	100.0

* 무응답 = 9명

가장 필요로 하는 농가 도우미에 관한 각 변인별 교차표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50대 이하 연령층은 일반 영농도우미, 전문 영농도우미, 간병도우미 순서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데 비해서 60대 이상 연령층은 일반 영농도우미, 간병도우미, 전문영농도우미 순서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28 참조).

연간소득별로 비교해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전문 영농도우미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비율이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간병도우미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29 참조).

표 5-28 연령별 가장 필요한 농가 도우미

단위 : 명, %

응답 범주	40대 이하	50대	60대 이상	계
일반적인 농사일을 대신해 주는 영농도우미	94(44.3)	55(41.3)	83(44.6)	232(43.7)
전문적인 농사일을 대신해 주는 영농도우미	53(25.0)	29(21.8)	30(16.1)	112(21.1)
출산, 산전, 산후에 산모의 건강관리를 대신해 주는 산모도우미	15(7.1)	7(5.3)	8(4.3)	30(5.6)
취사, 청소 등의 가사활동을 대신해 주는 가사도우미	12(5.7)	4(3.0)	4(2.2)	20(3.8)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건강관리를 대신해 주는 간병도우미	25(11.8)	28(21.1)	49(26.4)	102(19.2)
기타	7(3.3)	4(3.0)	1(0.5)	12(2.3)
필요 없음	6(2.8)	6(4.5)	11(5.9)	23(4.3)
계	212(100.0)	133(100.0)	186(100.0)	531(100.0)

$\chi^2 = 26.08$; DF = 12; P < .01

표 5-29 연간소득별 가장 필요한 농가 도우미

단위 : 명, %

응답 범주	999만원 이하	1000~ 1999만원	2000~ 2999만원	3000만원 이상	계
일반적인 농사일을 대신 해 주는 영농도우미	55(49.1)	84(40.8)	45(39.5)	47(49.0)	231(43.7)
전문적인 농사일을 대신 해 주는 영농도우미	17(15.2)	34(16.5)	32(28.1)	27(28.1)	110(20.8)
출산, 산전, 산후에 산모 의 건강관리를 대신해 주는 산모도우미	4(3.6)	11(5.3)	7(6.1)	8(8.3)	30(5.7)
취사, 청소 등의 가사활동을 대신해 주는 가사도우미	3(2.7)	11(5.3)	3(2.6)	3(3.1)	20(3.8)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건강관리를 대신해 주는 간병도우미	23(20.5)	56(27.2)	15(13.2)	7(7.3)	101(19.1)
기타	2(1.8)	3(1.5)	7(6.1)	1(1.1)	13(2.5)
필요 없음	8(7.1)	7(3.4)	5(4.4)	3(3.1)	23(4.4)
계	112(100.0)	206(100.0)	114(100.0)	96(100.0)	528(100.0)

$\chi^2 = 42.58$; DF = 18; P < .001

3.8. 농가 도우미 이용료의 정부 부담 정도

<표 5-30>에는 “귀하께서는 농가 도우미 이용료 중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30% 미만’ 21명(4.0%), ‘30~49%’ 34명(6.5%), ‘50%’ 293명(56.4%), ‘51~69%’ 72명(13.9%), ‘70% 이상’ 100명(19.2%)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응답자의 약 2/3 정도가 바람직한 정부 부담 정도를 50% 이하로 보고 있다.

표 5-30 농가 도우미 이용료의 정부 부담 정도

농가 도우미 이용료의 정부 부담 정도	빈도(명)	백분비(%)
30% 미만	21	4.0
30%~49%	34	6.5
50%	293	56.4
51%~69%	72	13.9
70% 이상	100	19.2
계	520	100.0

* 무응답 = 22명

농가 도우미 이용료의 정부 부담 정도에 관한 각 변인별 교차표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외 취업 유·무별로 비교해 보면, 농외 취업자일수록 농가 도우미 이용료의 정부 부담을 낮게 설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5-31 참조).

표 5-31 농외 취업 유·무별 농가 도우미 이용료의 정부 부담 정도

단위 : 명, %

응답 범주	농외 취업	농외 미취업	계
30% 미만	7(7.5)	14(3.3)	21(4.1)
30%~49%	12(12.9)	21(5.0)	33(6.4)
50%	44(47.3)	248(58.8)	292(56.7)
51%~69%	9(9.7)	61(14.5)	70(13.6)
70% 이상	21(22.6)	78(18.5)	99(19.2)
계	93(100.0)	422(100.0)	515(100.0)

$\chi^2 = 14.49$; DF = 4; P < .01

3.9. 농가 도우미제도 이용의사

<표 5-32>에는 “귀하께서는 농가 도우미제도를 이용하실 생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실시되면 즉시 이용하겠다’ 91명(17.3%), ‘조건이 맞으면 가급적 이용하겠다’ 389명(74.1%), ‘이용하지 않겠다’ 45명(8.6%)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의 91.4%가 농가 도우미제도를 이용하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농가 도우미제도 이용의사에 관한 각 변인별 교차표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 소득원별로 비교해 보면, 과수 농가(97.3%), 밭 농가(96.4%), 축산 농가(90.3%), 논 농가(85.9%)의 순서로 이용의사를 나타냈다(표 5-33 참조).

표 5-32 농가 도우미제도 이용의사

농가 도우미제도 이용의사	빈도(명)	백분비(%)
실시되면 즉시 이용하겠다	91	17.3
조건이 맞으면 가급적 이용하겠다	389	74.1
이용하지 않겠다	45	8.6
계	525	100.0

* 무응답 = 17명

표 5-33 주요 소득원별 농가 도우미제도 이용의사

단위 : 명, %

응답 범주	논 농가	밭 농가	과수 농가	축산 농가	계
실시되면 즉시 이용하겠다	32(16.8)	17(15.5)	22(20.0)	20(17.5)	91(17.4)
조건이 맞으면 가급적 이용하겠다	132(69.1)	89(80.9)	85(77.3)	83(72.8)	389(74.1)
이용하지 않겠다	27(14.1)	4(3.6)	3(2.7)	11(9.7)	45(8.5)
계	191(100.0)	110(100.0)	111(100.0)	114(100.0)	525(100.0)

$\chi^2 = 16.78$; DF = 6; P < .01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연령이 젊을수록 농가 도우미제도를 이용하겠다는 의사가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이용의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34 참조).

학력별로 비교해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농가 도우미제도를 이용의사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35 참조).

표 5-34 연령별 농가 도우미제도 이용의사

단위 : 명, %

응답 범주	40대 이하	50대	60대 이상	계
실시되면 즉시 이용하겠다	42(20.3)	14(10.6)	34(18.5)	90(17.3)
조건이 맞으면 가급적 이용하겠다	160(77.3)	102(77.9)	125(67.9)	387(74.1)
이용하지 않겠다	5(2.4)	15(11.5)	25(13.6)	45(8.6)
계	207(100.0)	131(100.0)	184(100.0)	522(100.0)

$$\chi^2 = 21.74; DF = 4; P < .001$$

표 5-35 학력별 농가 도우미제도 이용의사

단위 : 명, %

응답 범주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이상	계
실시되면 즉시 이용하겠다	14(13.3)	27(15.9)	49(19.8)	90(17.2)
조건이 맞으면 가급적 이용하겠 다	75(71.4)	127(74.7)	186(75.0)	388(74.2)
이용하지 않겠다	16(15.2)	16(9.4)	13(5.2)	45(8.6)
계	105(100.0)	170(100.0)	248(100.0)	523(100.0)

$$\chi^2 = 10.92; DF = 4; P < .05$$

농외 취업 유·무별로 비교해 보면, 농외 취업자일수록 ‘실시되면 즉시 이용하겠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고, 농외 미취업자일수록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36 참조).

표 5-36 농외 취업 유·무별 농가 도우미제도 이용의사

단위 : 명, %

응답 범주	농외 취업	농외 미취업	계
실시되면 즉시 이용하겠다	25(27.2)	65(15.2)	90(17.3)
조건이 맞으면 가급적 이용하겠다	62(67.4)	322(75.4)	384(74.0)
이용하지 않겠다	5(5.4)	40(9.4)	45(8.7)
계	92(100.0)	427(100.0)	519(100.0)

$\chi^2 = 8.24$; DF = 2; P < .05

3.10. 농가 도우미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표 5-37>에는 농가 도우미제도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사람(480명)을 대상으로 “귀하께서는 농가 도우미제도를 어떤 경우에 이용할 것인 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이용의사 비율은 ‘몸을 다치거나 병이 난 경우’(79.4%), ‘갑자기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생긴 경우’(55.0%), ‘결혼식, 장례식, 회갑과 같은 경조사에 참가하는 경우’(38.5%), ‘영농교육, 직업훈련, 연수 등에 참가하는 경우’(28.3%), ‘출산, 산전, 산후에 산모의 건강을 돌보는 경우’(22.7%), ‘정기 휴가나 여행을 갈 경우’(14.4%), ‘각종 회의, 모임 등에 참석하는 경우’(14.0%), ‘주말에 휴식을 취하는 경우’(3.3%)

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5-37 농가 도우미제도를 이용하겠다는 비율(N=480)

농가 도우미제도를 이용할 경우	백분비(%)
결혼식, 장례식, 회갑과 같은 경조사에 참가하는 경우	38.5
영농교육, 직업훈련, 연수 등에 참가하는 경우	28.3
출산, 산전, 산후에 산모의 건강을 돌보는 경우	22.7
정기휴가나 여행을 갈 경우	14.4
주말에 휴식을 취하는 경우	3.3
몸을 다치거나 병이 난 경우	79.4
갑자기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생길 경우	55.0
각종 회의, 모임 등에 참석하는 경우	14.0
기타	1.9

* 농가 도우미제도를 이용하겠다는 사람(480명)만을 대상으로 하며 중복응답이 가능함

3.11. 적정 농가 도우미 이용료

<표 5-38>에는 농가 도우미제도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사람(480명)을 대상으로 “귀하는 자신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할 때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도우미 이용료(1일)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1만원 미만’ 24명(12.2%), ‘1만원~1만 5천원 미만’ 144명(30.7%), ‘1만 5천원~2만원 미만’ 117명(24.9%), ‘2만원~2만 5천원 미만’ 87명(18.6%), ‘2만 5천원~3만원 미만’ 42명(9.0%), ‘3만원~3만 5천원 미만’ 11명(2.3%), ‘3만 5천원~4만원’ 9명(1.9%), ‘4만원 이상’ 2명(0.4%)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약 2/3 정도가 적정 농가 도우미 이용료를 2만원 이하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가 도우미제도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은(45명)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28.0%),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것 같아서’(24.0%), ‘개인적으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24.0%), ‘필요할 때마다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24.0%)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표 5-38 적정 농가 도우미 이용료(1일)

N = 480

적정 농가 도우미 이용료	빈도(명)	백분비(%)
1만원 미만	57	12.2
1만원~1만 5천원 미만	144	30.7
1만 5천원~2만원 미만	117	24.9
2만원~2만 5천원 미만	87	18.6
2만 5천원~3만원 미만	42	9.0
3만원~3만 5천원 미만	11	2.3
3만 5천원~4만원 미만	9	1.9
4만원 이상	2	0.4
계	469	100.0

* 무응답 = 11명

3.12. 농가 도우미 이용료 차등 여부

<표 5-39>에는 “귀하께서는 농가 도우미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에 따라서 도우미 이용료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차등을 두어야 한다’ 402명(77.3%), ‘차등을 둘 필요가 없다’ 85명(16.3%), ‘모르겠다’ 33명(6.3%)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약 3/4 가량이 농가 도우미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에 따라서 도우미 이용료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을 하고 있다.

농가 도우미 이용료 차등 여부에 관한 각 변인별 교차표분석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연령이 젊을수록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비율 및 모르겠다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40 참조).

학력별로 비교해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모르겠다라는 응답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41 참조).

표 5-39 도우미 이용료 차등 여부

도우미 이용료 차등 여부	빈도(명)	백분비(%)
차등을 두어야 한다	402	77.3
차등을 둘 필요가 없다	85	16.4
모르겠다	33	6.3
계	520	100.0

* 무응답 = 22명

표 5-40 연령별 도우미 이용료 차등 여부

단위 : 명, %

응답 범주	40대 이하	50대	60대 이상	계
차등을 두어야 한다	170(81.3)	99(76.1)	132(74.1)	401(77.5)
차등을 둘 필요가 없다	33(15.8)	23(17.7)	27(15.2)	83(16.1)
모르겠다	6(2.9)	8(6.2)	19(10.7)	33(6.4)
계	209(100.0)	130(100.0)	178(100.0)	517(100.0)

$\chi^2 = 10.18; DF = 4; P < .05$

연간소득별로 비교해 보면, 연간소득이 높을수록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고 연간소득이 낮을수록 모르겠다라는 응답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42 참조).

표 5-41 학력별 도우미 이용료 차등 여부

단위 : 명, %

응답 범주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이상	계
차등을 두어야 한다	70(70.0)	125(73.1)	206(83.4)	401(77.4)
차등을 둘 필요가 없다	18(18.0)	33(19.3)	33(13.4)	84(16.2)
모르겠다	12(12.0)	13(7.6)	8(3.2)	33(6.4)
계	100(100.0)	171(100.0)	247(100.0)	518(100.0)

$$\chi^2 = 13.89; DF = 4; P < .01$$

표 5-42 연간소득별 도우미 이용료 차등 여부

단위 : 명, %

응답 범주	999만원 이하	1000~ 1999만원	2000~ 2999만원	3000만원 이상	계
차등을 두어야 한다	79(73.8)	151(76.2)	88(77.9)	81(83.5)	399(77.5)
차등을 둘 필요가 없다	15(14.0)	32(16.2)	20(17.7)	16(16.5)	83(16.1)
모르겠다	13(12.2)	15(7.6)	5(4.4)	0(0)	33(6.4)
계	107(100.0)	198(100.0)	113(100.0)	97(100.0)	515(100.0)

$$\chi^2 = 13.99; DF = 6; P < .05$$

3.13. 농가 도우미 요원 참가의사

<표 5-43>에는 “만약 귀하가 농가 도우미 요원으로 선발된다면 전임 또는 시간제 도우미로서 작업의 종류에 따라서 적정 수준의 보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농가 도우미 요원으로 참여하실 생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49명(9.4%), ‘가급적 참여하겠다’ 247명(47.4%), ‘참여하지 않겠다’ 225명(43.2%)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56.8%가 농가 도우미 요원으로 참여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표 5-43 농가 도우미 요원 참여의사

농가 도우미 요원 참여의사	빈도(명)	백분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49	9.4
가급적 참여하겠다	247	47.4
참여하지 않겠다	225	43.2
계	521	100.0

* 무응답 = 21명

농가 도우미 요원 참여의사에 관한 각 변인별 교차표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젊을수록 농가 도우미 요원으로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44 참조).

학력별로 비교해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농가 도우미 요원으로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45 참조).

표 5-44 연령별 농가 도우미 요원 참여의사

단위 : 명, %

응답 범주	40대 이하	50대	60대 이상	계
참여하겠다	139(66.8)	71(55.5)	83(45.6)	293(56.6)
참여하지 않겠다	69(33.2)	57(44.5)	99(54.4)	225(43.4)
계	208(100.0)	128(100.0)	182(100.0)	518(100.0)

$\chi^2 = 17.88$; DF = 2; P < .001

표 5-45 학력별 농가 도우미 요원 참여의사

단위 : 명, %

응답 범주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이상	계
참여하겠다	44(42.7)	106(62.4)	144(58.5)	294(56.6)
참여하지 않겠다	59(57.3)	64(37.6)	102(41.5)	225(43.4)
계	103(100.0)	170(100.0)	246(100.0)	519(100.0)

$\chi^2 = 10.74$; DF = 2; P < .01

3.14. 참여를 원하는 농가 도우미 분야

<표 5-46>에는 농가 도우미 요원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296명)을 대상으로 “귀하께서는 어떤 농가 도우미 분야에 참여하고 싶은 지 원하시는 분야를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참여의사 비율은 ‘일반적인 농사일을 대신해 주는 영농도우미’ 53.0%, ‘전문적인 농사일을 대신해 주는 영농도우미’ 43.2%, ‘거동불편 환자들의 건강관리를 대신해 주는 간병도우미’ 22.3%, ‘취사, 청소 등의 가사활동을 대신해 주는 가

사도우미' 16.9%, '어린이를 대신 돌봐 주는 보육도우미' 16.6%, '산전, 산 후에 산모의 건강관리를 대신해 주는 산모도우미' 15.9%, '기타' 1.4%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농업인들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도우미 분야는 영농도우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 5-46 농가 도우미 요원으로 참여하겠다는 분야별 비율

(N=296)

농가 도우미 요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분야	백분비(%)
일반적인 농사일을 대신해 주는 영농도우미	53.0
전문적인 농사일을 대신해 주는 영농도우미	43.2
산전, 산후에 산모의 건강관리를 대신해 주는 산모도우미	15.9
취사, 청소 등의 가사활동을 대신해 주는 가사도우미	16.9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건강관리를 대신해 주는 간병도우미	22.3
어린이들을 대신 돌봐 주는 보육도우미	16.6
기타	1.4

* 농가 도우미 요원으로 참여하겠다는 사람(296명)만을 대상으로 하며 중복응답을 허용함

3.15. 기타 농가 도우미제도에 관한 자유의견

농가 도우미제도에 관한 자유의견으로는 “영농기술을 갖추고 있으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성실한 도우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37명),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임”(17명), “정부의보조가 더욱 필요함”(14명), “노인들을 도와줄 도우미가 필요함”(12명), “농번기 등 집중적으로 도우미가 필요한 시기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함”(8명), “필요시 손쉽게 즉시 이용할 수 있어야 함”(8명), “가사 지원 및 육아 도우미가

필요함”(8명), “농가 도우미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7명), “작업의 종류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기술과 능력에 따라 보수에 차등을 두어야 함”(6명), “농촌 현실에 맞게 도입되어야 함”(6명),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생길 때 도와줄 도우미가 필요함”(5명) 등이 제시되었다.

제 6 장

농가 도우미제도의 도입 방안

1. 농가 도우미제도의 도입 방법과 범위

농가의 대사 발생시 그 영농을 대행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영농을 지속할 수 있게 하고 농가의 안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농가 도우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복지제도의 하나로 수립하든가 또는 영농지원정책의 하나로 수립하든가 목적이 뚜렷해야 할 것이다. 영농지원정책의 하나로서 이 제도를 수립하는 경우 도우미의 범위는 영농 노동력 지원이 주목적이며 농가의 영농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복지정책의 하나로써 도입되는 것이라면 농업경영의 지속과 생산성 안정보다는 농가 가족원의 편익도모에 비중을 두게 되므로 가사 일을 대행해주는 것에 중점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농림부의 농업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로서 농업생산의 중단을 막고 농가경영을 안정시키며 나아가 농어민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농가의 대사 발생시 영농대행서비스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부터 영농대행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위험이 따른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 우

선은 대농민 홍보와 전문 도우미의 양성, 도우미 관리기구와 운영체계의 수립 등 기본적인 체계가 확립되는 일련의 시범사업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시범사업은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사업의 시행가능성 또는 기대하는 효과의 달성가능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므로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 이 제도는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므로 농민들의 반응은 찬성이 압도적이고 확대시행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를 시행함에 있어 기대하는 농업생산의 증대와 생산농가의 경제 안정효과가 투자된 비용에 비해 얼마나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운영비를 살펴보자. 이 제도 시행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구성 운영하게 된다면 그 조직관리 운영비용이 크게 들게 되므로 문제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우미제도의 관리체계를 기존의 지방정부나 농업협동조합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크게 절약될 수 있다. 그 다음은 이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살펴 볼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방치해왔던 농가의 각종 사고에 의한 경제파탄이나 생산중단 위험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농가들에게는 계산할 수 없는 만족감을 안겨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독일의 농가도우미제도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경영주의 사고, 사망이다. 이 경우 농장관리를 위해 3개월에서 최고 1년기간 동안 과부에게 대행노동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그 농장은 대를 이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국가로서도 대를 이어 경영되는 전통있는 가족농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실제로 이들 가족농들이 나라의 농업안정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래서 독일의 농가도우미제도는 가족농 유지와 생산성 보장 및 사회보장제도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우리 나라는 농가도우미제도가 사회복지정책으로서 채택될 경우에도 질병과 관련되는 의료보험 급여로서는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농업노동사고와 같은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농민 노동사고 보험이 도입되지 못한 상태여서 농

가도우미제도의 농업정책적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나라도 장기적으로는 농가규모가 커지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게 되면 농가의 휴가나 농업 관련 교육, 훈련 등을 위한 도우미의 자부담 수요도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독일의 경우도 사망이나 사고, 입원 등으로 인한 도우미 수요 보다는 휴가나 교육, 훈련, 여행 등에 따른 수요가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 상태이다.

1.1. 농가 도우미제도의 단계적 적용 확대

농가의 길·휴 대사는 항상 발생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 발생시 영농대행을 필요로 하는 영농대행서비스의 수요는 어느 농촌에서나 비슷한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도우미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될 경우 그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의 도우미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와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문제 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처음에는 규모를 축소하여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시 지역과 실시범위, 도우미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가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제도를 보완하면서 동시에 도우미 인력 양성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1단계로서는 도우미를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되 시범지역은 전국의 각도별로 최소한 1개의 시 또는 군을 선정할 수 있어야 하며 선정된 전국 9개의 시·군을 사업단위로 하는 것이 지역 안배에 유리하다. 시·군은 기초 지방자치 행정청으로서 독립적인 사업이 가능한 단위이며 군 내에서는 관련 농업 분야의 수요에 맞게 도우미 인력도 선발하여 양성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도우미의 지원 범위를 수요의 긴급성이나 우선 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법이다. 모든 긴급수요에 적용하고 모든 농사일에 적용하기에는 전문적인 도우미 요원 확보에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은 수요도가 높고 긴급한 수요 부문인 영농주부의 임신 출산과 영농가족의 사망시 영농대행서비스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시험사업의 결과에 따라 점차 확대하여 길, 휴대사 모두와 교육, 훈련, 휴가 등의 수요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한편 적용의 범위를 특정한 농사로만 제한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대행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움이 큰 시설농업과 축산업 부문만을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의 일반 농업 부문은 다음 단계에서 실시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같은 지역 내에서 농가간 혜택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게 되므로 긴급 수요부문을 제한하는 방법(임신 출산과 사망)을 적용하고 특정 농사 범위로만 제한하는 방법은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1. 2. 농가 도우미 인력의 선발과 양성

영농대행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농가수요에 즉시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우미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도우미 인력은 농가가 요구하는 영농노동의 종류에 포괄적으로 전문성이 갖추어진 인력을 제공해야 하므로 각 농사노동별 전문 도우미(헬퍼) 양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가장 필요한 것이 도우미 인력이다. 그리고 이들 도우미는 일정한 교육을 거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양과 영농지식은 물론 각자가 맡은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격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영농도우미 양성 체계가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우미는 경우에 따라 수요가 집중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이들 도우미의 생활보장 문제와 관련된 비용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도우미의 인력은 전국을 확대 적용할 경우 각 지역별(군별) 수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도별 Pool을 구성하거나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Pool 구성도 가능하여 동원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야 한다. 도우미 인력 선발과 인력 양성은 도우미제도 도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므로 이를 별도로 상세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1.3. 도우미제도 관련 법규 제정

농가 도우미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규정과 도입을 위한 근거 법규의 마련은 농가 도우미제도를 주관하는 주관기관과 사업체계가 확정되어야 논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도우미제도의 주관을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우(1안)와 농업협동조합이 주관하는 경우(2안), 이 두가지 방법을 결합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동조합의 연계체계(3안)로 제안하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1안과 2안의 이 두 가지의 체계를 가정한 법규 제정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1안의 경우 지방정부가 그 사업의 주체로서 직접 농가도우미 인력을 관리하며 사업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지방정부가 직접 관리할 경우 도우미는 공무원이 되든가 최소한 공무원적 성격을 띄는 신분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서비스의 경직화와 공무원의 비대화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도우미제도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노동에는 친절과 성의가 깃들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의 보수는 노동 능력이나 서비스의 량(시간)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주어져야 하므로 공무원의 노동성격이 될 수는 없다. 결국 지방 정부가 주관하더라도 시행 부서는 별도의 조직체계를 가진 기구가 이를 수행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러한 전문영농 인력 pool을 구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노동서비스 제공을 주선하며 관리하기에는 농업기술센터(전농촌지도소)가 유리하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미 오래전부터 농민 기술지도를 위해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농민 중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잘 알고 있어 특히 전문 도우미인력 확보와 양성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농가 도우미제도를 주관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 이 제도는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련 법규정을 찾아보면 관련되는 규정을 농업·농촌기본법과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다.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의 농촌지역 개발 및 복지 증진 규정에서 농어민 복지 증진의 규정으로 영농대행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삽입할 수 있다. 또한 농가 주부의 출산 시 영농대행서비스 지원은 농업, 농촌 기본법 제14조(여성농업인의 육

성)나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 모성보호의 강화 중 ①항과 ②항의 규정을 활용하여 산모의 영농대행 도우미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할 수 있다.

또한 지방 정부가 이를 각각 주관하는 경우는 지방정부의 자치규정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각 지방정부마다 다른 성격의 제도가 수립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규정 삽입을 거부하는 지방정부도 있을 수 있어 사업의 통일성이나 형평성이 갖추어지기 어렵게 될 것이다. 결국 농민에게 시행되는 복지정책적 제도는 중앙정부의 총괄하에 지방정부를 통해 시행되는 형태가 될 때 공평성과 통일성이 갖추어질 수 있으므로 중앙 정부의 통제 규정인 농업, 농촌기본법 활용이나 여성발전기본법의 활용 방법이 가장 유리하다.

한편 협동조합이 이 제도를 총괄 또는 주관하는 경우 완전히 민간조직의 사업으로 체계화되는 것이므로 이것은 농협 내부의 사업 규정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사업자체는 농업, 농촌기본법이나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 유리하다.

선행 외국들의 사례를 보면, 사회보험 급여로써 영농대행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실시하려는 경우는, 국민의료보험법 제4장 보험급여 중 제33조 요양비 규정이나, 제34조 분만비 및 제35조 장제비 규정 중에 추가하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회보험 급여로서의 농가도우미 제도 지원은 앞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복지정책에 중심을 두게 되므로 영농대행 보다는 가사대행에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나라의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들이 점차 급여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어 이와 같은 영농대행서비스 급여의 적용도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농가 도우미서비스의 지원이 사회보험 급여로 채택될 경우에도 농림 부문의 도우미 지원제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 때에는 사회보험이 적용되고 있지 못한 농업노동사고와 농가의 휴가,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해 주는 농민복지제도로서 기능하게 될 것으로 본다. 선

해외국의 사례에서도 농가 도우미제도의 수요는 농가의 길, 휴 대사에 대한 대행서비스 요구보다는 휴가와 교육, 훈련에 따른 대행서비스 요구가 훨씬 더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우리 나라의 농가 도우미제도의 주업무도 이와 같은 경향을 띠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농가 도우미제도의 시행을 위한 내부 규정은 현행 낙농헬퍼제도의 내부규정을 활용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 규정에서 다루어 질 수 있는 주요 내용들은 ① 본 사업의 목적과 적용 범위 및 용어의 정의 ② 사업내용과 내용별 범위 ③ 이용자 규정과 이용기간, 이용신청 요령 등 ④ 이용료의 부담과 정부지원 ⑤ 도우미의 대행노동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의사고와 책임 및 처리방법 ⑥ 헬퍼 요원의 자격과 헬퍼의 업무규정 및 헬퍼 운용에 관한 규정 ⑦ 업무추진을 위한 정부지원과 관련 규정의 적용, 업무지원에 부수되는 필요규정 등 이 명시되어야 한다.

1.4. 도우미의 지원 범위와 농가부담

농가 도우미제도 도입시 도우미 지원의 범위는 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는 농사일의 범위 즉 적용되는 사건별 도우미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정하는 것과 그 도우미를 이용 할 수 있는 최대기간 및 도우미 비용의 정부 지원 문제를 구분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는 사건과 농사일의 범위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단계적인 도입 방법을 적용할 때 우선은 농가 주부의 임신 출산과 가족원의 사망 사건에만 적용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 발생의 경우 도우미를 요청할 수 있는 농사일은 모든 농사일을 구분 없이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농가의 대사 발생시 지원하는 영농 대행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농가의 수요에 부응하여야 하므로 요구하는 기간동안 요구하는 농사일을 모두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수요에 대처하고 긴급성이 완화되면 그 수요

가 약화되는 것이므로 발생하는 사안에 따라 긴급한 수요 기간을 기본 수요로 보고 이를 우선 보장토록 해야 한다. 도우미제도 시행시 정부의 지원은 이와 같은 기본 수요를 감안하여 지원기간을 정할 수 있다.

영농대행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농가가 원하는 수요기간 동안의 도우미 비용의 일부(농가조사에서는 50%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남)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농가의 비용 부담이 일정한 비율로 사용기간에 따라 결정되므로 영세소농의 경우는 그 부담이 과중해지고 따라서 허용된 기간 동안의 도우미 이용마저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대 농이나 부농의 경우에는 허용된 기간 이상으로 도우미를 이용하게 되는 불공평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농가가 원하는 수요기간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사건에 따라 기본적인 영농대행 기간(기본대행 기간) 동안은 무상으로 도우미를 제공하고 나머지 도우미 임의 활용 허용기간(임의대행기간)까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모든 영세 소농이나 중대농이 공평하게 기본서비스 기간만은 도우미의 무료제공을 받게 되고 그 이상 허용된 도우미 이용기간까지는 자기 부담으로 도우미를 이용하게 되므로 비교적 공평한 도우미 지원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긴급지원을 요하는 가정 대사의 종류별 기본서비스 기간(기본 대행 기간)과 최대 이용 기간을 설정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예를 들어 농가 가족원의 사망시 도우미 이용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의 한계는 1개월이며 그 중 1주일(7일)은 기본서비스 기간으로서 무상으로 제공되는데 이 1주의 무상서비스 기간 동안의 도우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이다. 이때 기본서비스 기간을 1주일로 결정한 것은 최고 5일장(장례식)이라는 전통적 장례기간을 감안한 수습기간만을 정부지원 도우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나머지 3주간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농가 주부의 출산의 경우는 산전 산후 기간을 선택하여 3주간(삼7일 산후 조리 전통)은 기본서비스 기간으로 하여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산모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기간은 기본 서비스 기간 3주간을 포함하여

2개월간을 이용할 수 있으나 기본 서비스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은 본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의 문제점은 농한기에 일반 농가주부가 출산하는 경우 농사일을 대행할 노동력이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3주간(무상지원)의 산모대행 영농도우미를 남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세번 째 방법으로 기본 서비스기간에도 일부나마 본인부담(예를 들어, 20~30%)을 하게 하고, 기본 서비스기간을 초과하는 임의 서비스기간에는 보다 높은 본인부담(예를 들어 60~70%)을 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이 있다. 기본 서비스기간에 일부 본인부담을 하도록 만들면 농한기에 일반농가가

이와 같은 방법에 따라 도우미 이용의 범위를 설정할 경우 정부의 지원 범위는 ①의 방법에서는 전체 사용비용의 50% 수준까지를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그 이유는 중소농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도우미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며 농가여론 조사에서도 50% 정도의 지원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②의 방법에서는 자연스럽게 전체 수요 중 기본서비스 기간에 대해서만 정부가 지원(전액)하며 나머지의 연장 기간은 자부담으로 처리되므로 그 비용 부담의 범위와 한계가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다. ③의 방법은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본 서비스기간과 임의 서비스기간 동안의 비용자 부담비율을 적절히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정부부담이 대략 50% 수준에 이르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우미 이용료의 수준결정은 민감한 문제로서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낮은 이용료를 원하고 노동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생활유지에 필요한 높은 임금을 요구하게 된다. 농가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농가 도우미를 이용하려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용료의 수준이 비교적 낮게 나왔다(제5장의 표 5-38을 참조할 것). 즉, 농가 도우미제도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는 응답자들의 약 2/3 정도가 적정한 농가 도우미 이용료의 수준을 2만원/1일 당 이하로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도우미 이용료는 현재의 농촌노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의 노임인 1일 당 2만 5천 원(일반농업노동)부터 4만원(전문농업

노동)까지의 수준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지역별 노동 종류별 노임은 각각 다르다. 그러나 전문농사일과 일반농사일을 각각 차등 적용해야 하므로 적절한 도우미 이용료는 농가 조사치(2만원/1일 당)보다는 높지만 전문농업노동의 임금(4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실제로 낙농헬퍼제도에서 통용되고 있는 전문가의 노임은 1일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40,000원 수준이다. 이 노임기준은 1995년 1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최근 IMF의 영향을 받아 일시적으로 노임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기는 했으나 이제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므로 이 노임기준은 현재에도 통용될 수 있는 수준이다(농협조사월보에 따르면 1999년의 농촌노임은 대략 4만원 정도임).

만약의 경우에 도우미 이용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된다면 사용농가는 전문농업의 경우는 20,000원, 일반농업의 경우는 12,500원 수준에서 농가 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농가 도우미제도의 관리체계 수립

농가 도우미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 이를 주관하고 총괄하는 조직 관리가 이 제도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도우미 인력의 확보와 양성과 관리가 가능하고 제도 수행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이를 맡아 수행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 제도 시행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만들거나 새로운 사업체를 만든다는 것은 구조개혁 시대에 인력이나 재정형편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관련이 깊은 조직 또는 기관들을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볼 수 있다. 새로운 제도의 성격이 공권적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강제성이 내포되는 사업으로 성립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정부가 직접 관장하거나 또는 정부의 대행기관인 공사, 공단 등이 이를 관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성격이 임의적이고 강제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는 대개 민간단체나

조직으로 만들어지거나 이들 기구에 사업을 관장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농가 도우미제도는 농가의 생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차원에서 정부의 의무성이 강조되는 사업이며 농민에게는 이용이 희망에 따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임의성이 전제되고 있는 과제이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 제도를 개발하려는 경우는 정부기구나 정부 관련 기구를 통해 이를 수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부가 이 제도를 정책적으로 도입할 경우 제도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별로 조직을 독립 운영하거나 전국적으로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화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도우미 인력의 수요가 특수한 경우는 전국 규모로 도우미 Pool이 구성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경우는 지역단위의 도우미 Pool로서도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역적 독립성을 가지면서 도우미 제도가 운영되고 특수한 경우에만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될 수 있도록 운영의 신축성을 가지는 조직은 시, 군단위에 독립적 성격을 지니면서도 전국적인 연결망을 가진 농촌지도조직(시, 군농업기술센터, 도농업기술원, 중앙농촌진흥청)이나 시, 군 행정조직이다.

다른 한편으로 도우미의 이용자인 농어민의 자립 운영을 존중하여 민간 조직에서 임의사업으로 수행하게 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지역적 조직과 중앙연대조직까지를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이 적격 조직이라고 본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이 사업을 총괄하게 될 경우 자비 부담이 높아지므로 이용률이 떨어지고 제도의 정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예측은 현행 낙농헬퍼제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부의 지원이 있었던 1980년대에는 제도가 활성화되었으나 최근 그 지원이 끊기고 자립 경영이 되면서 재정난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장단점을 고려하여 지방정부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민간조직인 농업협동조합과 함께 합동으로 관리 운영하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 지방행정조직을 이용한 도우미제도 관리 체계(제1안)

지방행정 조직을 이용하여 농가 도우미제도를 관장하게 될 경우는 시, 군

청이 최종 시행관청으로서 도우미의 pool을 관리하여 농가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의 내부규정을 만들어 집행하게 된다(그림 6-1 참조). 이 때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각 농업분야의 전문 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타가 이 사업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방자치 행정청이 이를 직접 관장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도우미 인력 pool 확보와 교육 훈련 등에 애로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농가 도우미제도의 관리 체계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용 농가와 헬퍼 관리자 간에는 이용 신청과 출역 조정 및 비용부담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중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각종사고에 대비한 손해보상이나 분쟁 조정 규정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상위 기관인 도청에서는 도우미 pool 관리를 책임지고 광역출역이 필요한 특수 분야를 담당한다. 중앙 부처는 전체 제도 정비와 산하 조직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2.2. 농업협동조합을 이용한 도우미제도 관리체계(2안)

민간단체인 농업협동조합을 농가 도우미제도의 관리조직으로 활용하게 될 경우 협동조합 조직이 각 시·군 단위와 도 단위 및 중앙 단위까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어 지방행정 조직을 이용하는 경우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이 경우는 어떤 형태이든 정부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따른 관리 감독이 따라야 하므로 이를 중앙단위 협동조합과 정부 관장 부처로 연결시키면 된다(그림 6-2 참조). 이러한 협동조합 관리체계는 제도 시행이 편리하기는 하지만 조합직원의 인건비가 높게 들고 도우미 양성에서 각 농업분야별 전문인력의 확보와 훈련에 취약점이 있다. 농업기술센타는 기술연수 훈련에 유리하지만 협동조합의 기술연수훈련기능은 농사 기술 분야로 발전되지 못하고 조합경영이나 각종 신용사업 기술 훈련 방향으로만 집중되어 왔었기 때문이다.

그림 6-1 지방행정조직을 이용한 관리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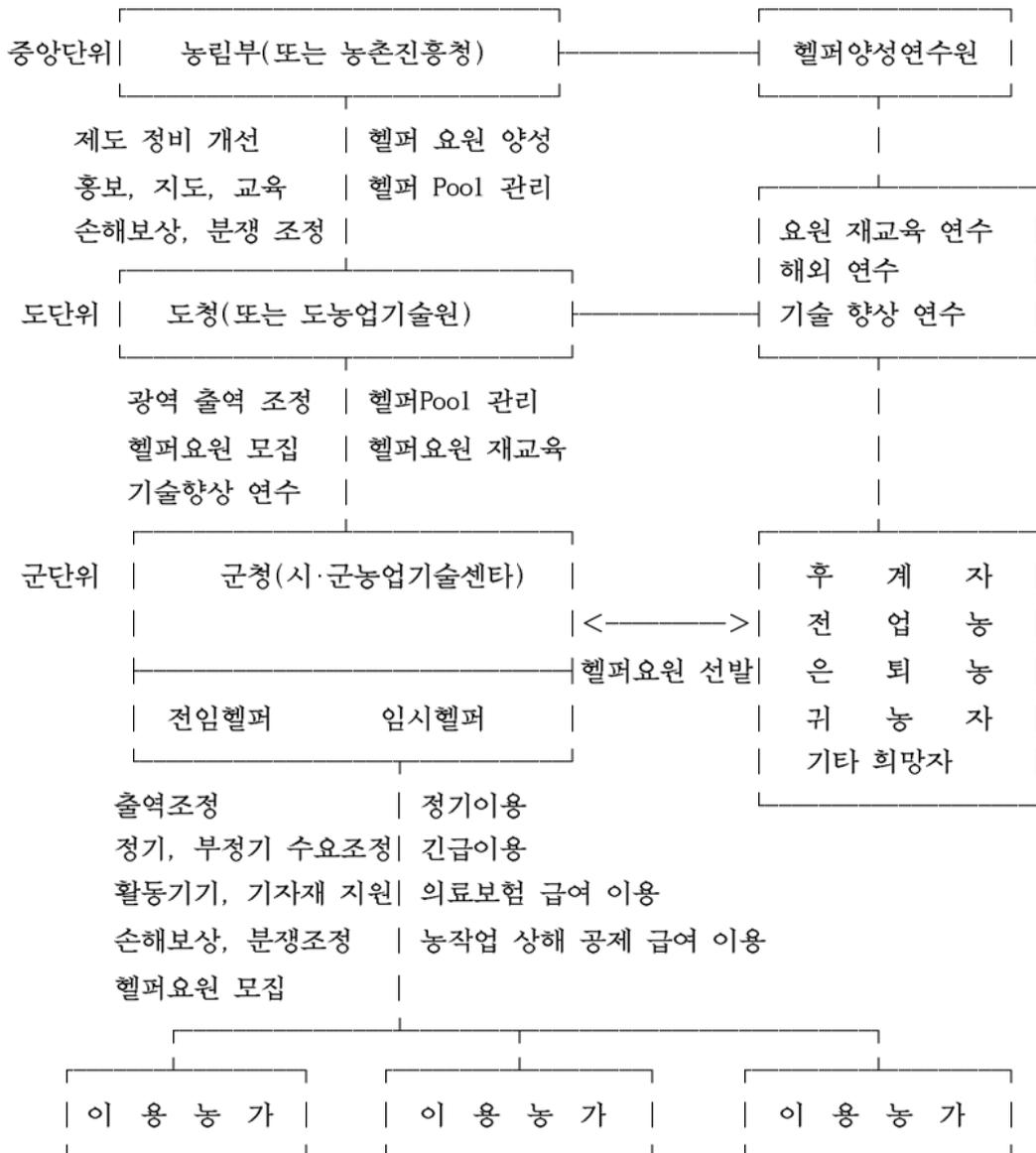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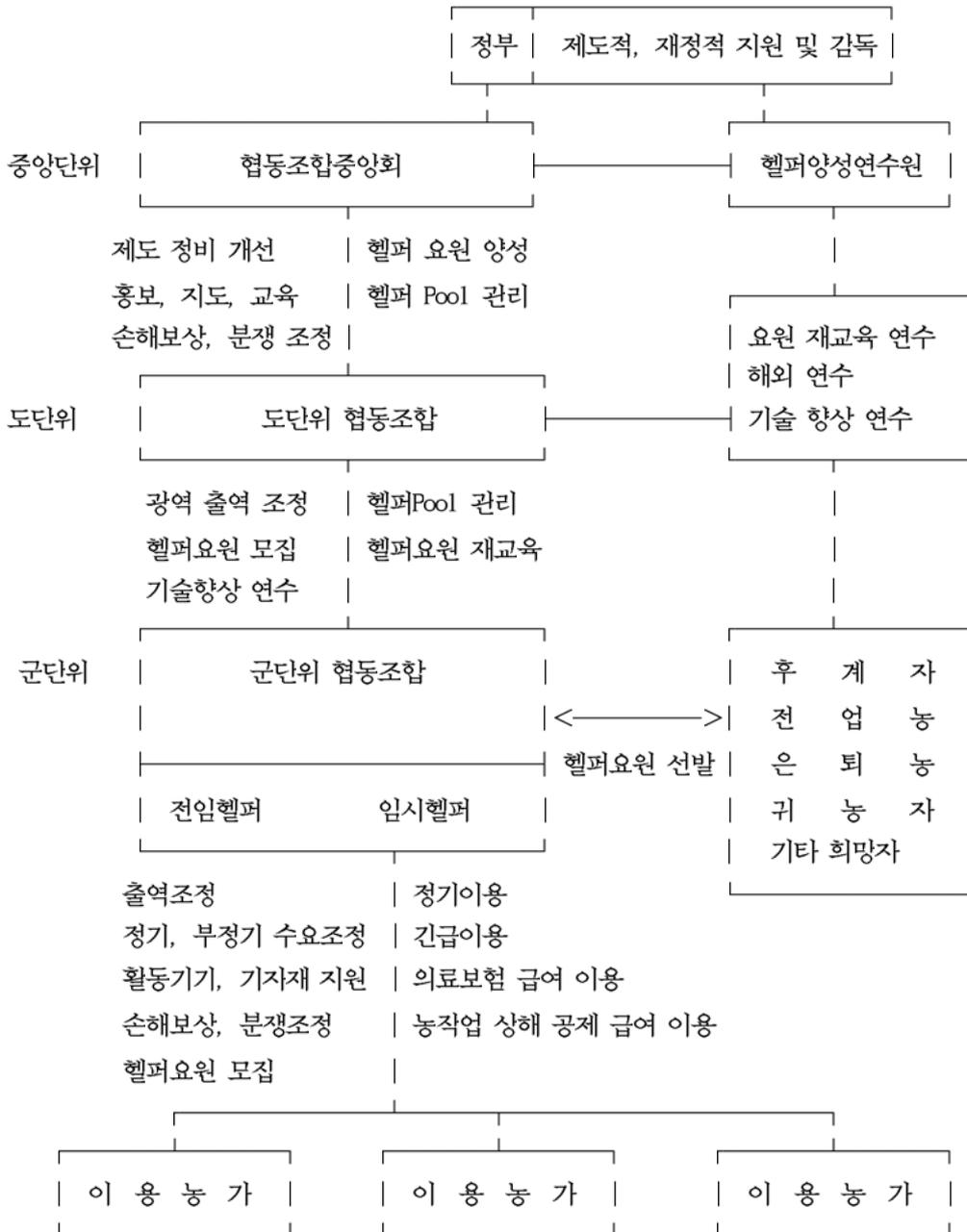


그림 6-2 농업협동조합을 이용한 관리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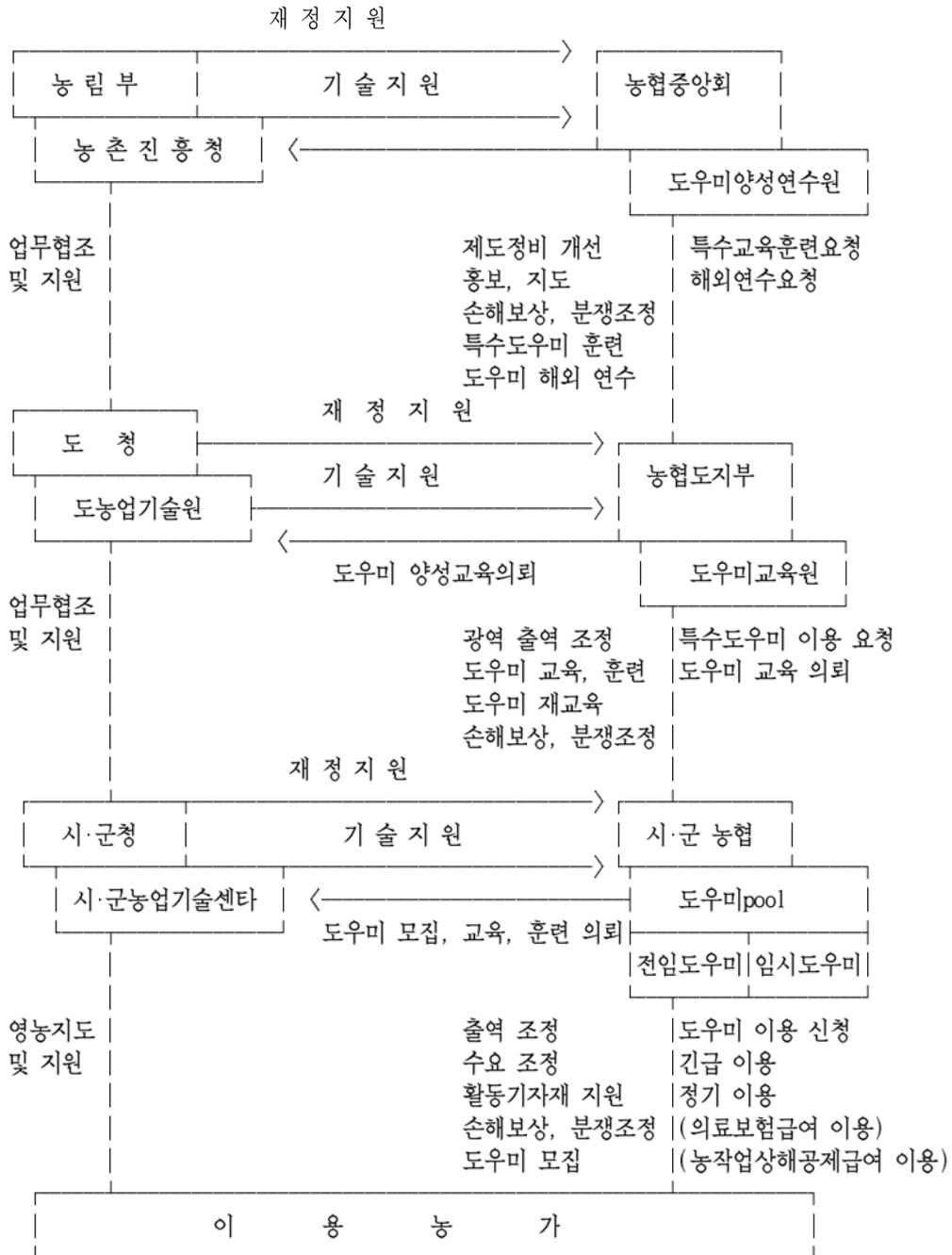


2.3.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의 합동관리 체계(3안)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이 가지는 각각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우미제도의 관리운영을 합동관리 방식으로 체계화 하는 방법도 있다(그림 6-3 참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청이 농업기술센타를 통해 도우미의 모집과 교육, 훈련 등 양성을 총괄하고 이렇게 양성된 도우미들의 자격관리를 맡아주면 협동조합은 도우미 자격증과 분야에 따라 농가의 요구시 출역을 조정하면서 활용만 하면 된다. 농가가 사고로 문제에 당면하게 되면 읍, 면 농협지소나 출장소 또는 시, 군 조합으로 직접 도우미의 파견 요청을 하게 되고 이를 받아 조합에서는 해당되는 도우미를 파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규정에 따라 도우미 활용 비용의 일부는 정부(지방 정부+중앙 정부)가 지원하고 일부는 이용하는 농가가 부담한다. 이와 같은 비용부담, 각출과 지원 그리고 도우미의 보수전달 등은 협동조합이 총괄하는 것이다. 즉 실질적인 도우미 사업은 농업

협동조합이 담당하고 도우미 인력 모집과 교육, 훈련, 자격증 수여와 보수 교육 등 인력관리만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한 농업기술센타가 맡아 주는 체계이다. 이 경우 도우미양성연수원을 농촌진흥청 산하에 둘 수도 있고 농협중앙회 산하에 둘 수도 있다. 같은 방법으로 도단위에서 맡아야 할 도우미의 일반교육원도 도농업기술원에 두거나 농협도지부 산하에 둘 수도 있다.

그림 6-3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의 합동관리체계도



3. 기존 농가 도우미제도의 개선과 확대 적용 방안

3.1. 현행 낙농헬퍼 제도의 개선과 확대 적용 방안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낙농헬퍼제도는 낙농농가에게만 적용되는 농가도우미제도이며 낙농농가의 젖소 사육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만은 도우미 수요모두를 적용시키고 있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비용부담이 높은 것으로, 이 제도를 주관하고 있는 낙농조합들마저도 재정사정이 좋지 못해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개선하고 새로운 농가 도우미제도와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정과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제기된 문제점별로 해결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낙농헬퍼에 대한 수요가 주말과 연휴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농가의 이용시기를 분산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낙농헬퍼제도는 수요의 범위 제한이 없이 활용을 장려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왔으므로 여유 있는 농가들의 휴가 이용이나 여행을 위한 주말, 연휴 이용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헬퍼 수요는 주말이나 연휴 및 여행 성수기에만 몰리고 이때는 헬퍼가 모자라서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었다. 이제는 이를 새로이 계획되고 있는 농가 도우미제도로 확대 재편하려면 모든 낙농가와 축산농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야하고 이용 가능한 범위도 가정 길·흙 대사 발생과 출산농가에 한정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가정 대사나 출산은 년중으로 분산될 수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휴가나 여행, 교육과 훈련 등을 위한 수요에도 적용해야 하므로 헬퍼 pool이 구성되는대로 이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성수기와 비수기의 비용부담에 격차를 두는 방법이나 주말과 연휴 이용에는 할증료를 추가 부담 시키는

방법도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둘째, 성수기의 도우미 인력 부족 문제는 이 제도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큰 원인이 되어 왔다. 그러므로 충분한 도우미 인력 pool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도우미를 직업으로서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생활문제 해결이 어려운 도우미를 여러 명 확보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직업적인 전임도우미를 기본적인 수요에 맞게 소수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부업적으로 도우미 일을 하거나 일시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임시도우미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임시도우미는 같은 분야의 농사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능력이 있어 가외로 노임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사람과 은퇴한 농민 또는 타직업에 종사하면서도 어떤 농업분야에는 조력이 가능한자로서 희망에 따라 모집하고 일정한 교육 과정을 거쳐 양성하는 것이다. 이들 부업도우미(임시도우미) pool은 얼마든지 많아도 되므로 이를 널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우미 이용료의 자부담이 높아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이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가정대사의 종류에 따라 영농가족원의 사망시 기본수요 1주일 그리고 농가주부의 출산시는 삼7일(3주)까지 무료 제공하고 나머지 활용할 수 있는 최대기간까지는 본인 부담으로 하게 될 경우 해결될 수 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농가는 기본수요기간만 활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현행 낙농헬퍼제도는 현재 농업협동조합과 낙농 및 축산협동조합이 통합 단계에 있으므로 이 과정이 지나 완전 통합된다면 낙농만이 아닌 일반 축산 농가와 전체농가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농가도우미제도로써 성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 낙농농가는 낙농에 관한 전문헬퍼의 도움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헬퍼나 임시도우미의 지원도 받을 수 있게 통합될 것이다.

3.2 기타 농가 도우미제도의 통합조정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가 도우미제도 중에는 그 제도가 아직 시초단계이기

는 하지만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주관하는 여성농업인 도우미제도가 있다. 이것도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농가 도우미제도와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농가 도우미제도가 여러 단체나 조직에서 각각 운영될 경우 이를 이용하는 농가는 제도가 중복되어 혼란이 오게 되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업협동조합이 시작한 여성 농업인 도우미제도는 농림부가 구상하고 있는 농가 도우미제도 중 농가 주부의 산모도우미제도와 도입 목적이 유사하므로 이를 통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현재 협동조합의 여성농업인 도우미제도는 자원봉사자에 의한 무료서비스 형태로서 소극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활성화되기가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렇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게 되는 자원봉사 중심의 도우미제도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개선한다면 이들 자원봉사자들을 기술여부에 따라 전임도우미 또는 임시도우미로 구분 교육하고 이들 교육 이수자를 도우미 pool로 활용한다면 여성도우미 pool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시·군단위 조합이 몇 곳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분석하여 그 장단점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한다면 현재 계획중인 정부의 농가 도우미제도의 도입 적용이 한층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이 추진해온 농가 도우미제도의 도우미 노동의 대부분은 농사일보다는 가정대사의 가사노동 대행에 집중되고 있어 정부의 농업 노동대행 도우미제도와는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이제 도의 통합조정에서는 농가 도우미가 농사일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가사 대행도 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업협동조합에서는 정부가 농가 도우미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 제도가 수립되면 이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체내의 여성도우미제도 체계수립을 서두르고 있는 상태이다. 농업협동조합은 이 제도를 통해 농가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혜택으로서의 제도를 수행 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위임받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 시행이 곤란하므로 지방행정청의 주관에 유도하고 있어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는 수요자인 농가의 편익제공과 이용의 편리성에 기초를 두어 평가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농업협동조합과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그 장점만을 살려 관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어느 경우에라도 기존의 농가 여성 도우미제도나 낙농헬퍼제도는 정부의 새로운 농가 도우미제도 구상에 합류되도록하되 그 과정에서 제도의 주관을 어느 조직체계에 맡기는 가는 농민들의 의견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 7 장

농가 도우미 인력의 양성 방안

1. 농가도우미의 선발과 교육

1.1. 농가도우미의 종류

농가의 영농수요에 대응한 대행인력을 지원하는 문제는 대행노동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중요한 요건이 된다. 그런데 영농노동력은 농사일의 종류에 따라 전문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도우미 인력을 확보한 후에는 일정한 수준으로 기술을 가지는 전문 도우미를 양성하는 기술교육 과정도 필요하다. 영농 대행 노동력 중에는 보통의 농업지식이나 경험만으로도 그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대행노동은 전문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이를 각각 구분하여 전문적인 도우미와 일반 도우미로 나누어야 하고 이들 도우미 중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업적으로 도우미 일을 하는 전업도우미를 기본 숫자만큼 확보한 후 나머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업적 임시도우미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 직업도우미

- 전문도우미 : 직업적으로 도우미 일을 하되 특정분야에 전문기술과 경력을 가진자로서 도우미 양성 규정에 따라 전문도우미 자격증을 취득한 도우미
- 일반도우미 : 직업적으로 도우미 일을 하되 일반 농사를 도울 수 있는 일반 기술과 경력을 가진자로서 도우미 양성 규정에 따라 일반도우미 자격증을 취득한 도우미

○ 임시(부업)도우미

- 전문도우미 : 부업적으로 도우미 일을 하되 특정분야에 전문 기술과 경력을 가진 도우미 희망자로서 도우미 양성 교육을 이수한 자
- 일반도우미 : 부업적으로 도우미 일을 하되 일반 농사 경력자를 가진 도우미 희망자로서 도우미 양성 교육을 이수한 자

1.2. 농가도우미의 선발

도우미의 선발은 기본적으로 희망자에 한해 자격 심사를 거쳐 전문도우미 또는 일반도우미의 소질을 나누게 된다. 도우미 선발 대상은 도우미가 되겠다고 희망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영농대행 서비스가 가능한 사람이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농업에 대한 경력(농업계 학교 졸업 또는 농사 경력 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농사를 하고 있는 농민이거나 과거에 농사경험이 있는 은퇴자, 또는 실업자 등이 그 대상이다.

선발 방법은 일정한 규정에 따라 도우미제도 주관 부서에 희망을 하게 되면 주관 부서의 도우미 인력부에서 자격을 심사토록 한다. 그 심사의 중점은 영농경력 여부이며 희망하는 도우미의 종류별 모집정원이다. 특히 직업도우

미의 선발은 선발 자격을 엄정하게 심사하되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농업계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과 영농경력 5년 이상의 경력자이어야 한다. 그 희망자가 많을 때는 공개 경쟁 시험을 거쳐 합격자로 하되 시험은 영농대행 서비스의 기초 원리부터 농업기술의 전문성까지 체크한다.

어느 특정 기술분야에 도우미신청자가 없는 경우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나 영농자를 권유하여 도우미 인력으로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해야 한다.

1.3. 도우미 교육과 훈련 및 자격 관리

규정에 따라 선발된 도우미들은 도우미 양성 일반과정을 이수토록 하여 기본적인 도우미의 소양교육과 영농관련 기술 교육을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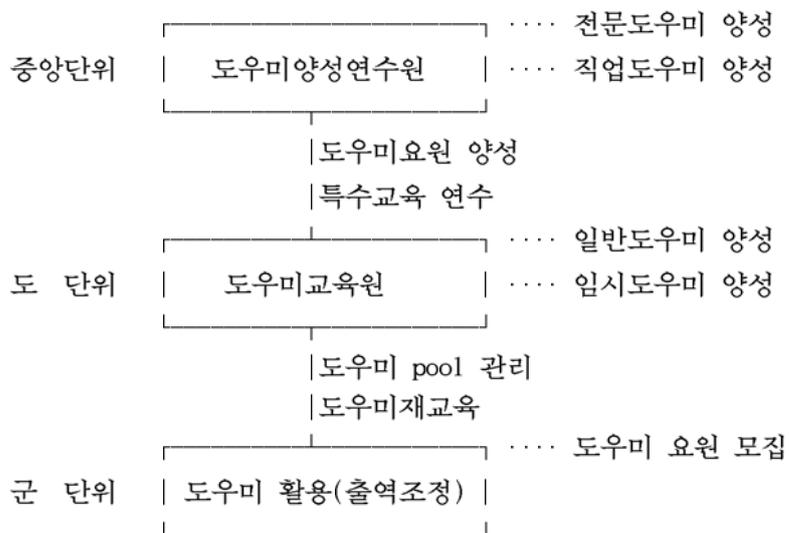
일반 영농도우미와 전문 영농도우미는 교육과 훈련 과정이 다르다. 일반도우미는 일반과정만 이수하도록 하고 전문도우미는 일반과정 이수 후에 전문과정을 두어 전업농의 농장 연수나 해외 연수 등 특별과정을 추가 이수토록 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한다. 특히 직업도우미로써 전문분야별 도우미는 전문과정 이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토록 해야 한다. 또한 모든 도우미들은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재충전을 위한 추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하여 지속적인 자기 발전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도우미 인력의 양성과 관리를 위해서 농가 도우미제도 관리 조직은 도우미의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양성기관을 설립하거나 의뢰교육할 수 있는 교육원, 훈련원 등 양성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도우미 인력양성 기구는 최소한 도단위 이상의 도우미 관리 조직에서 운영토록 하되 중앙단위의 도우미 교육 훈련 기관도 필요하다.

도우미 양성 과정

- 일반과정(일반도우미)
 - 일반 상식, 교양 및 농업 기초, 기술 교육 : 공통
 - 분야별 영농 기술, 훈련 및 실습 : 분야별 선택
- 전문과정(전문도우미)
 - 일반과정 수료 후 전업농장 연수, 해외연수 및 특별 훈련 추가
- 추수교육(일반 및 전문 도우미 전원)
 - 도 및 중앙단위 교육, 훈련 기관에서 정기적인 재충전 교육

그림 7-1 도우미 양성 체계도



1.4. 도우미 pool 구성 및 관리

도우미제도에서 중요한 도우미 인력은 농가들의 수요 변화에 따라 그 숫자가 정해진다. 도우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농가의 수요에 충당하지 못해 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도우미 활동을 통해 직업적 만족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수요가 꾸준하고 활용도가 높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도우미 이용료도 적정 수준에서 결정되어 그 수입자체로서 생활유지가 가능해야 한다. 그래서 도우미 인력은 모자라도 걱정이고 너무 많아도 도우미의 수입원이 적어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원활한 인력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기본적인 수용에 상응하는 도우미 인력은 직업도우미로서 확보해 두고 나머지 계절적 수요나 특수한 과잉수요 등에 대비한 임시도우미를 충분히 확보해 두도록 하는 것이다. 직업도우미는 상임직원인 셈이며 임시도우미는 임시직원인 셈이다. 임시도우미는 본업이 있으면서 부업적으로 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소득 문제가 도우미 활동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직업도우미(전업도우미)는 기본적으로 그 숫자가 적기 때문에 지역적 연계를 통해 도단위의 pool을 구성하고 특히 특수한 농사일(예: 낙농, 양돈 등)의 도우미는 광역 도우미 pool을 구성 운영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계속 일거리가 있고 경제성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임시도우미는 시·군단위에서 pool을 구성해도 가능하다. 임시도우미 인력은 상당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하므로 시·군 단위에서도 충분한 숫자를 확보하게 되지만 그 확보가 용이하지 못한 경우는 이들 임시도우미의 pool도 도단위로 광역조직화 하거나 또는 이웃 시·군과 연계된 pool을 운영할 수도 있다.

도우미는 도우미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도우미희망자들을 모두 도우미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도우미 pool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는 일정한 규칙과 질서가 요구된다. 어느 도우미에게만 일이 집중되고 분산되지 않는다는가 어느 한사람에게 어려운 일만 집중적으로 출역을 요구

하는 등의 문제점은 규칙을 정해 순서에 따라 출역이 이루어지고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도우미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가 특정 도우미를 지정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잘 아는 사람이거나 인척중에서도 도우미출역을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도우미출역은 도우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도우미 인력이 너무 많은 경우는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적이 저조하고 농가의 반응이 좋지 못한 도우미에 대한 별칙규정 내지 자격증 취소 규정도 필요하다.

2. 사고재해 보상과 분쟁 조정

도우미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불의의 사고나 잘못된 처리로 피해가 발생하여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잘못 처리되면 쌍방의 손실은 물론 그로 인해 제도의 불신이 커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도우미가 다치는 경우는 특히 축산농가의 영농대행시 동물에 의한 사고가 많은데, 예를 들면 젖소를 다룰 때 소의 성질을 모르면 뒷발질에 채여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 반대로 도우미가 농가의 시설이나 동식물에 피해를 주게 되는 사고는, 예를 들면 가축을 잘못 다뤄 다치거나 죽게 하는 사고, 농장시설의 파괴, 농기계 사고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불의의 사고 발생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배상과 분쟁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부분의 경우는 상해보험(일본) 농작업 사고보험(독일)등 보험방식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일본의 낙농헬퍼제도가 만들어 놓은 상해보험제도를 살펴보면 노동중의 상해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표 7-1 참조). 보험료는 이용자 1인 당 1000엔이며 나머지 1000엔은 낙농헬퍼전국협회에서 지원해 준다.

독일의 경우는 농작업 노동사고 보험제도가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 정립되어있어 모든 농업노동자는(일고노동자까지) 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고 보험료는 이들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주가 100% 부담(정부지

표 7-1 일본 낙농헬퍼제도의 상해보험제도

구분	후유상해 보험금	후유상해 보험금
사망 보험금	12,804천엔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
후유상해 보험금	상기의 3 ~ 100%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
입원 보험금	10,000엔/일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
수술 보험금	상기의 10, 20, 40배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 (입원 지불의 경우로(에서) 수술의 종류에 의한)
통원 보험금	5,000엔/일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의 90일

자료 : 사단법인 낙농헬퍼전국협회, 1999.

원 30~50% 수준)하고 자영농의 자가 노동의 경우는 본인이 100% 부담(정부 지원 30~50% 수준)한다. 상해시 보험금 지급은 상해정도에 따라 각각 지급되며 사망 또는 장해 발생시는 농민연금으로 연결된다.

우리 나라의 농가도우미제도에서 도우미들의 상해 사고는 위와 같은 사례들을 참고할 때 현재 개발되어 있는 농협의 농작업 상해공제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농협의 농작업 상해공제제도를 이용할 경우 그 보험료의 일부는 도우미 본인의 부담으로 하되 일부는 도우미제도 관리 주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일본의 비용부담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 이유는 본인이 모두 부담할 경우 부담이 높아 가입을 기피할 우려가 있고 제도 주체가 모두 부담할 경우는 사업비의 과중화는 물론 도우미들간에 도덕적 피해 발생의 위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농협의 농작업상해 공제제도는 농업인의 농작업 재해사고를 중점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표 7-2 참조). 이 제도는 농업인의 농기계사고 및 농약 중독 등 농작업시 발생한 재해 사고를 중심으로 보장해 드리는 농촌형 공

표 7-2 농협의 농작업상해 공제제도

(단위 :원)

구분		1년	3년
재해사망, 상해공제료	1인계약	900	2,500
	부부계약	1,330	3,600
입원, 치료비 공제료 (계약1건 당)	1인계약	6,800	18,100
	부부계약	12,600	34,500

제사업이다. 공제료는 저렴한데 비해서 보장은 입원 및 통원치료비까지 적용된다. 즉, 1년 또는 3년의 단기 순수보장성 공제로서 공제료는 아주 저렴하지만 농작업사고로 인한 입원 및 통원치료비와 별도 입원비까지 보장해준다. 그리고 부부가 동시에 가입할 경우에는 공제료를 할인해준다(표 7-3 참조).

농협의 농작업상해 공제제도의 가입내용을 살펴보면, 가입대상은 15세에서 70세까지의 농업인이고, 공제기간은 1년 및 3년이다. 그리고 계약한도는 100만원~3천만원(피공제자 1인당 2건 이내)이며, 계약단위는 100만원이며, 공제료 납입방법은 일시납(가입시 1회납입)으로 되어 있다(표 7-4 참조).

<표 7-5>에는 농협 농작업상해 공제제도의 공제료가 제시되어 있다. 사망 및 폐질 시에는 공제금액의 150%를 지급하고 신체장애 시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 공제금액의 5~100%까지 지급한다.

농가도우미제도를 지방정부가 주관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해 사고를 정부의 보상만으로 해결하려 할 경우는 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산업재해보험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재해보험제도에서는 보험료의 부담이 전액 고용주의 부담으로 되어 있어 노동자의 부담이 없으나 도우미제도에서는 도우미 사용주를 정부로 볼 때 정부의 일방적인 보상제도가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도우미제도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기관의 장이 사업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사례는 공공근로 사업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가입 규정을 인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3 농협의 농작업상해 공제제도의 보장내용

지 급 사 유		지급액
재해사망시		계약금액의 50%
농작업에 의한 재해사고	신체장애1급-7급시	계약금액의 150%-5%
	입원 및 통원 치료시	계약금액에 상관없이 입원 및 통원 치료비에시 10만원을 차감한 금액 (100만원 한도)
	1인 이상 입원시	계약금액에 상관없이 입원 1인당 1만원(120원 한도)
기타 재해사고	신체장애1급-7급시	계약금액의 75%-25%

표 7-4 농협 농작업상해 공제제도의 공제료 예시

단위 : 원

구분	1년		3년	
	1인계약	부부계약	1인계약	부부계약
100만원	7,730	13,930	20,800	38,110
500만원	11,450	19,250	30,900	52,550
1,000만원	16,100	25,900	43,400	70,600
1,500만원	20,750	32,550	55,900	88,650
2,000만원	25,400	39,200	68,400	106,700
3,000만원	34,700	52,500	93,400	142,800

표 7-5 농협 농작업상해 공제제도의 공제 지급액

구 분	지 급 액					
사 망	공제금액의 50%					
폐질 시	공제금액의 150%					
신체장애 시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공제금액의 100%	" 50%	" 30%	" 15%	" 10%	" 5%

<공공근로사업의 산업재해 보험규정>

○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해보상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 법적근거 : 근로기준법 제81조 내지 제86조

* 보상대상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즉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

* 보상내용 :

- 요양보상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을 요할 때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유시까지 지급하는 현물급여(다만 부득이한 경우 요양비 지급)
- 휴업보상 :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지급
- 장애보상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장애가 남게되는 경우 그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제1급~제14급)
- 유족보상 : 업무상 재해로 사망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유족에게 지급(평균임금의 1,000일분)

- 장 의 비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평균임금의 90일분)

○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 및 처리 절차

* 업무상 재해의 개념

-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업무와 재해간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로 인하여 근로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를 말하며
- 업무란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일, 즉 “근로계약을 기초로 하여 형성되는 사용종속적인 근로관계 하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직무상 행하는 일은 물론 그 부수적인 행위를 총칭

* 업무상 여부의 판단

- 업무상 재해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되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근로자의 업무상 내재되어 있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인가, 사회의 경험법칙상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따라서,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는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업주 시설물 이용중의 재해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 다만, 업무상 과로와 관련하여 발병할 수 있는 뇌혈관·심장질환(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경우에는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여야 함
-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였거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 등

* 처리 절차 및 방법

- 신청에 관한 규격화된 일정한 서식은 없음. 다만, 산재보험법상의 각종 신청서식을 참조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 사업시행기관에서는 업무상 재해인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업무상 재해인 경우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보상 실시

* 기타 참고사항

- 업무상재해 여부 판단시에는 산재보험시행규칙 제32조 내지 제39조 및 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참조
- 기타 업무상 재해여부·재해보상 내용 및 보상방법과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당해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관리하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관할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보상부에 문의하여 처리

여기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고상해보상문제는 영농대행 활동중에 발생하는 도우미 인체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도우미가 영농대행 활동중에 범하는 실수로 인하거나 정상적으로 대행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농가의 피해(특히, 재산적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 이 문제는 일반 재해보상(손해보상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피해 여부에 관한 분쟁들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적절하게 조정해야만 하겠다. 이러한 재해보상과 분쟁조정은 도우미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 8 장

요약 및 결론

60년대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지속적인 이농으로 농촌가족의 핵가족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이제 농가의 가구당 인구가 3명으로 거의 핵가족화되어 있어 가족원 중 누군가가 사고를 당하게 되며 그가 담당했던 영농의 한 분야가 기능이 마비되고 나머지 가족원이 사태수습에 나서게 되면 농장경영은 중단되거나 폐쇄될 수 밖에 없는 상태이다. 선진 외국에서는 이와 같은 불의의 사고나 애·경사 발생의 경우 가족원의 기능을 대신해서 농장을 돌봐줌으로써 농장경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영농헬퍼(농가도우미)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어 농가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농가 도우미제도의 도입에 대한 요구가 시설농가나 축산농가들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고 농촌사회의 노동여건 변화가 그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농가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농정 당국에서는 우선 영농대행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가정의 애·경사 중 몇 가지만이라도 시범적으로 대행인력을 지원해주어 농가 경영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가 도우미제도의 도입을 계획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의 농가 도우미제도 도입계획에 부응하여 효과적인 시행과 제도 정착을 위해 현재 민간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사한 도우미제도의 시행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선형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제도 수립 방안을 강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

다. 따라서 연구의 내용은 농가도우미의 정의에 따라서는 다양한 분야의 대행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지만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농가 경영의 지속을 통한 생산성 보장이라는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농가의 경영지속을 위한 대행서비스의 범위 설정을 우선으로 다루었다. 그 다음은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와 유사한 낙농헬퍼제도와 농협중앙회의 여성농업인 도우미제도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였고 이를 새로이 구상하는 농가 도우미제도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종합적인 농가 도우미제도 관리운영 체계를 구상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선행외국들의 농가 헬퍼제도들을 검토하였으며 제도 도입 방법으로는 정부의 예산 마련과 도우미 인력 양성의 진척 수준에 맞게 단계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도 도입 방법과 제도내용 구상을 위하여 농가여론 및 전문가들의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도의 내용 구성에 참작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도우미의 분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농업과 관련해서는 영농도우미와 가사도우미 및 농가도우미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영농도우미는 농사일을 대행하는 도우미, 가사도우미는 가정의 가사 일을 대행하는 도우미이며 농가도우미는 이를 포괄하는 의미이다. 대부분의 경우 영농대행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가사와 관련된 부분이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는 대사 발생 시 사후 수습을 위해 포괄적인 노동대행이 되는데 이를 농가도우미로 정의할 수 있다.
- ② 우리 나라에는 1992년에 처음으로 서울우유조합이 도입 실시한 낙농헬퍼제도가 있으나 제도의 적용대상이 낙농농가로 한정되어 수요가 적은 반면 전업적인 직업도우미로만 노동력을 충당하고 있어 도우미들의 생활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도우미 수요가 공휴일이나 연휴 및 휴가철에 집중되어 출역 조정이 곤란하며 정부의 지원이 없고 주관 단체인 낙농조합의 재정도 빈약하여 계속 쇠퇴하고 있는 상태이다.

- ③ 농협중앙회가 각 지역 조합을 통해 최근(1998년)에 시작한 여성농업인 도우미제도는 도우미의 체계적인 양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무급의 봉사인력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가사일손돕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이다.
- ④ 선해외국들 중에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도우미제도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데 유럽 국가들은 대개 사회보험제도의 급여형태로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농업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영국, 일본, 미국 등이 있으나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 ⑤ 농가 도우미제도에 관한 농가 의견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 500명과 통신원의 부인 500명(합계1000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설문지 회수율은 54.2%임)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영농참여 비율(77.4%)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부노동력만으로 거의 모든 영농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가정에 대사가 발생되었을 때 주로 도움을 청하는 대상자는 가족(40.9%)과 이웃(22.9%)이며 도우미 제도에 대해서는 86%가 필요하다고 했고 가장 필요한 경우는 몸을 다치거나 병이 난 경우(53.6%), 위급한 일 발생시(17.6%), 경조사 발생시(11.8%), 자녀출산(4.5%)시 등으로 나타났다.
 - 농가주부의 출산시 도우미의 이용기간은 출산전후 1개월씩(44.1%)과 출산후 1개월(40.2%) 정도면 좋겠다는 의견이며 도움을 받을 일은 일반적인 영농이 (43.7%)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전문적인 농사일(21%), 거동불편, 환자들의 간병도우미(19.1%) 순이었다.
 - 도우미의 이용료는 농사일의 종류와 노동시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하고 1일 이용료는 1만원~25,000원 수준에서 결정되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이용료의 50%정도는 정부가 지원해주기를 원하고 있었다.
 -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도우미 요원으로 참여하겠다(56.8%)는 응답자도 많았으며 주로 일반농사(53%)나 전문농사(43.2%) 그리고 거동불편 환자

의 간병(22.3%) 등을 할 수 있다고 답하고 있다.

- ⑥ 이러한 농가조사와 기존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새로운 농가도우미 제도의 도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결론이다. 우선은 농가의 수요도가 높은 부문 중 영농가족의 사망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특히 여성농업인들의 요구가 높은 농가주부의 출산시 영농대행을 대상으로 하여 몇 개의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 그 다음 제도가 정비되고 도우미 인력의 pool이 갖추어지면 점차 가정의 길·흉 대사 발생과 휴가, 교육훈련 등의 수요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다.
 - 도우미 수요가 높았던 장애자와 질병자 간병도우미 문제는 곧 의료보험의 정식 급여항목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농업부문에서의 취급을 보류하였으나 차후 의료보험급여로 채택될 경우에도 영농도우미의 인력관리는 농가도우미 관리주체가 맡아야 될 것으로 본다.
- ⑦ 농가 도우미제도 도입시 관리 체계는 기존의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비용절감을 최대화하되 성격에 맞는 기관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군청과 군농업기술센터) 또는 민간단체인 농업협동조합을 각각 도우미제도 위탁사업주관 기구로 가상해 보았다. 1안은 시, 군청인 지방자치 단체가 관리주체로서 군농업기술센터나 도 농업기술원의 체계를 활용하여 도우미 제도를 관리하는 방법이고 2안은 농업협동조합이 관리 운영하는 방법, 3안은 이들 두 조직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 3안의 경우는 농업분야별 전문지도 인력을 가지고 있어 도우미 선발이나 양성, 교육, 훈련, 추수교육 등이 유리한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센터)와 도우미 인력의 출역조정, 농민의 수요 접수, 이용료 징수 등의 업무처리가 용이한 농업협동조합이 각각의 특징을 이용해서 합동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 ⑧ 도우미 인력 양성과 자격관리에서 도우미는 기본적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소수의 전업도우미(직업적 도우미)와 수시로 급격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임시도우미(부업도우미)로 구성하고 이들 중 전문 분야별 전문도우미와 일반농사일에 필요한 일반도우미를 구분 양성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도우미의 관리는 시·군 단위를 원칙으로 하지만 도우미 인력의 pool을 넓게 구성하기 위해 도 단위 도우미 pool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시범사업 이후)

- ⑨ 농가도우미 관련 법규 마련은 농업, 농촌기본법과 여성발전기본법 중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내용규정은 현행 낙농헬퍼제도의 규정을 참고로 하여 사무관장부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 ⑩ 도우미의 이용범위와 정부지원 내용에서 살펴보면 농업노동 대행을 위한 도우미로서 가족원 사망의 경우 전체 1개월동안 사용할 수 있으나 5일장을 기준으로 하여 1주간을 기본 수요기간으로 보고 이 기간동안은 정부가 지원하며 나머지 3주동안은 희망에 따라 도우미를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용하게 되면 비용은 전액자부담(최고 3주까지)하도록 하는 기본수요와 희망수요기간을 나누는 것으로 하였다. 이 때 기본 서비스기간의 낭비적 이용을 막고 농가의 자급력을 높이기 위해 기본 서비스기간 동안의 정부지원을 약간 낮추고(70% 수준) 나머지 희망수요기간에는 30%정도만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 수요기간 중 기본수요 기간을 나누지 않고 모두를 통합해서 정부지원을 50%로 하는 방법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나머지 50%의 자부담 때문에 영세소농들은 허용된 도우미 활용 혜택을 포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 농가가 부담하게 될 도우미 이용료는 농가조사에서 1일당 20,000원 수준으로 나왔고 전문적인 농업노동에서는 40,000원(낙농헬퍼의 1일 노임)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의 농촌노임도 남자노임이 1일 4만원 정도이고 여자들의 일반노임이 25,000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도

우미와 전문도우미의 비용을 차등화 하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⑪ 농가도우미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의 낙농헬퍼제도나 농협의 농가여성도우미제도는 이 제도에 통합시켜 동일한 규정에 의해 추진되는 통합도우미제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낙농헬퍼제도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도우미 적용 범위 조정과 임시(부업)헬퍼제도 도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 ⑫ 농가도우미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도우미는 체계적으로 양성되어야 하며 수요농가에게 질적 양적으로 충족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도우미의 양성과정과 교육, 훈련체계는 도우미제도 도입과 동시에 시행되어야 할 우선과제이다. 도우미의 선발 대상은 모든 농민과 은퇴농 및 귀농자와 실직자 등 농업 노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으로 하되 그 중에서 선발된 도우미는 규정된 도우미 양성교육 과정을 거치되 희망에 따라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야 한다.
- ⑬ 도우미제도 시행 중에 불의의 사고로 도우미가 다치는 경우나 도우미로 인해 농가가 손해를 입는 경우 또는 상호간 분쟁 발생 등에 대비하여 분쟁 조정과 손해배상 규정이 필요하다. 분쟁 조정은 제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 해야하고 사고의 경우는 농협의 농작업 상해 공제제도를 이용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경우 산재보험 규정이나 공공근로사업자 재해보상규정 등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보험료 각출에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농작업 상해공제제도의 가입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우미 활동중에 사고로 농가가 입는 재산적 피해발생은 손해배상규정을 적용하고 각종의 분쟁발생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며 그에

따르는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특히 정부지원이 필요하지만 제도가 정착되고 사업 범위가 넓어져 수요가 커지면 자체부담으로도 어느 정도의 운영은 가능해 질 수 있다. 그것은 대체로 선행외국들의 농가도우미 수요가 휴가와, 교육, 훈련 등 임의 수요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련 당국에서는 긴급한 사고 발생으로 인해 생산이 중단되고 가정이 파탄되는 위험을 막아주고 나아가서는 농민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농가 도우미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 김경미(정리), 1999. “농촌여성문제에 대한 인식과 연구·지도사업 방향의 설정”, 연구와 지도, 40(통권 제210호): 12~23.
- 김영옥, 김이선, 1999. 21C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박민선, 1998. “유럽의 농작업·가사 대행서비스제도”, 한국농어민신문, 9월 28일.
- 신해식, 1991. “낙농헬퍼제도 도입의 필요성”, 서울우유 12월호: 8-10.
- 신해식, 1994. “낙농헬퍼제도의 운영실태와 육성방안”, 농업정책학회지 21(2): 185-201.
- 정명채, 민상기, 최경환, 1992. 은퇴농어민에 대한 지원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명채, 민상기, 문순철, 송미령, 1997. 농업구조개선과 중소농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축협중앙회, 1997. 낙농헬퍼이론 교육교재.
- 최원근, 1993. “낙농 헬퍼 사업 개선 방향”, 서울우유 11월호: 33-43.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99. Annual Report from the Commission: Equal Opportunities for Women and Men in the European Union(1998).
- European Union,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1998. Labour Situation and Strategies of Farm Women in Diversified Rural Areas of Europe.
- Kurt Noell, 1983. Die Altershilfe fur Landwirte, Erich Schmidt Verlag, Berlin.
- Kurt Noel, 1985, Die Krankenversicherung der Landwirte, Verlag Hans Meister KG., Kassel.
- Volkmar Goerz. U. A., 1981. Handwoerterbuch des Agrarrechts, Erich Schmidt Verlag, Berlin.
- 酪農ヘルパー全國協會, 1999, “アメリカの酪農ヘルパー”, 酪農ヘルパー 제23号: 12-13.
- 酪農ヘルパー全國協會, 1999, “オランダのヘルパー制度①”, 酪農ヘルパー 제24号:

12-13.

酪農ヘルパー全国協会, 1998, 酪農ヘルパー利用組合実態調査結果.

みどりの農業協同組合, 1999, JAみどりの高齢者福祉活動計画.

JA, 1999, “特輯 介護保険とJA”, 月刊 JA (6月): 28-51.

<Abstract>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Farm Helper System

Farm helper system refers to the system which helps work for farmers on condition of charging fee, when farmers have to stop temporarily their farm work or housework because of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childbirth, education, disease, holiday, and so on. The farm helper system has been developed for a long time in European countries. But, Korea is just preparing the introduction of farm helper system now.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o identify the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existing farm helper related systems; 2) to investigate the farm helper system of major foreign countries; 3) to survey farmers' opinions on farm helper system; 4) to prepare the framework, concrete contents, and operation method of farm helper system.

The major research methods of this study were mailed survey and the collection of existing related data. The mailed survey was administered by the correspondents and their wives of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to provide data on farmers' opinions on farm helper system. The number of sample in the mailed survey were 1,000 persons(500 correspondents and 500 their wives). The recovery rate of the mailed survey was 54.2%. The collection of existing related data was conducted by investigating the data of related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research institutes. Descriptive statistics(such as frequencies, percentage, means) and cross-classification tables were used to organize and summarize the data of mailed survey.

The farm helpers were classified into various groups according to the types of farm work and the source of the helper service.

In this study, dairy farm helper system, Agricultural Cooperatives' helper system for farm women, and the introduction plan for farm helper system of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were investigated in order to identify the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existing farm helper related systems in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mailed survey, the types of farm helper which farmers need were general farm helper(43.7%), special farm helper(21.0%), and nursing helper(19.1%). 91.4 percent of the respondents expressed use intention of the farm helper system. About two thirds of the respondents wanted 20,000 won or less as an adequate fee for farm helper service per day.

The chapter 6 was devoted to the suggestion for the introduction and management methods of farm helper system. Three management methods of farm helper system were suggested. Also, in chapter 6, the methods to improve the existing farm helper related systems were explained. In chapter 7, the selection of farm helpers and education, the compensation of accident and disaster, and conflict adjustment methods were suggested.

Researcher : Myoung-Chae Joung, Dae-Shik Park

E-mail Address : pds8382@kreisun.krei.re.kr

부 록

부록 1. 농가 도우미제도에 관한 의견조사를 위한 설문지
(현지통신원용 및 통신원 부인용)

부록 2. 낙농헬퍼사업시행요령(천안낙농축산업협동조합)

부록 1. 농가 도우미제도에 관한 의견조사를 위한 설문지
(현지통신원용 및 통신원 부인용)

농가 도우미제도에 관한 의견조사
(현지통신원용)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촌 현장에서 항상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면서 저희 연구원의 여론조사에도 적극 협조해주시는 현지통신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농림부의 의뢰를 받아 농가 도우미제도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농가 도우미제도는 농업인이 경조사, 출산, 교육참가, 질병, 휴가 등으로 농작업이나 가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 도우미가 이를 대신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농가 도우미제도의 도입방향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이 기록하신 후에 기재된 조사표를 동봉한 반송봉투에 넣어서 빠른 시일 안에 저희 연구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통신원 여러분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조사표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박대식 박사(02-3299-4345)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1999년 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姜正一

통신원번호

--	--	--	--	--

성명:

전화번호:

(봉투에 기재된 통신원번호 다섯 자리 기재 요망)

주소:

문항 1.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귀댁의 가족 수는 몇 명입니까?

* 본인을 포함해서 총 () 명

문항 2. 귀하의 뒤를 이어 농사를 지을 자녀가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3) 자녀의 의사에 맡긴다

문항 3. 귀하의 연세는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 세

문항 4.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음)

- 1) 무학
2) 한학(서당)
3) 초등(국민)학교 졸업
4) 중학교 졸업
5) 고등학교 졸업
6) 전문대 졸업
7) 대학 졸업 이상

문항 5. 귀하께서는 농사일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까?

- 1) 대부분 내가 한다
2) 주된 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일부만 거드는 정도이다
3) 과거에는 농사일에 참여했으나 현재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4) 과거에도 농사일에 참여하지 않았고 현재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문항 6. 귀하는 농사일 이외에 다른 사업을 운영하거나 직장에 취업을 하고 있

습니까?

- 1) 예 (무엇 :)
- 2) 아니오

문항 7. 지금까지 귀하의 영농경력은 얼마나 됩니까?

합계 () 년

문항 8. 지난해 귀댁의 연간소득은 대략 얼마나 되었습니까?

- | | |
|----------------|----------------|
| 1) 500만원 미만 | 2) 500~999만원 |
| 3) 1000~1499만원 | 4) 1500~1999만원 |
| 5) 2000~2499만원 | 6) 2500~2999만원 |
| 7) 3000~3499만원 | 8) 3500만원 이상 |

문항 9. 경조사, 출산, 교육참가, 질병, 급한 개인용무 등으로 농작업이나 가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할 경우에 귀하는 주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까?

- | | |
|----------------------|----------------------|
| 1) 가족 | 2) 친척 |
| 3) 이웃 | 4) 작목반, 계 등의 회원이나 친구 |
| 5) 부탁할 만한 마땅한 사람이 없음 | 6) 기타() |

문항 10. 귀하는 농가 도우미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1) 들어본 적이 없다
- 2) 들어본 적은 있으나 그 내용은 잘 모른다
- 3) 들어본 적이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4)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 다음은 농가 도우미제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 1) 결혼식, 장례식, 회갑과 같은 경조사에 참가하는 경우
- 2) 영농교육, 직업훈련, 연수 등에 참가하는 경우
- 3) 출산, 산전, 산후에 산모의 건강을 돌보는 경우
- 4) 정기휴가나 여행을 갈 경우
- 5) 주말에 휴식을 취하는 경우
- 6) 몸을 다치거나 병이 난 경우
- 7) 갑자기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생길 경우
- 8) 각종 회의, 모임 등에 참석하는 경우
- 9) 기타()

문항 14. 출산, 산전, 산후에 산모의 건강을 돌봐주는 산모도우미의 경우, 이용 가능한 기간을 어느 정도로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1) 출산 전·후의 1개월 2) 출산 후 1개월 3) 출산 후 2개월
- 4) 출산 후 3개월 5) 기타 ()

문항 15. 귀택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농가 도우미는 어떤 것입니까?

- 1) 일반적인 농사일을 대신해 주는 영농도우미
- 2) 전문적인 농사일을 대신해 주는 영농도우미
- 3) 출산, 산전, 산후에 산모의 건강관리를 대신해 주는 산모도우미
- 4) 취사, 청소 등의 가사활동을 대신해 주는 가사도우미
- 5)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건강관리를 대신해 주는 간병도우미
- 6) 기타()
- 7) 필요 없음

문항 16. 귀하께서는 농가 도우미 이용료 중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30% 미만 2) 30%~49% 3) 50%
- 4) 51%~69% 5) 70% 이상

문항 17. 귀하께서는 농가 도우미제도를 이용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 1) 실시되면 즉시 이용하겠다(문항 17-1 및 문항 17-2로)
- 2) 조건이 맞으면 가급적 이용하겠다(문항 17-1 및 문항 17-2로)
- 3) 이용하지 않겠다(문항 17-3으로)

문항 17-1. (문항 17에서 1 또는 2에 응답한 경우) 귀하께서는 농가 도우미제도를 어떤 경우에 이용할 것인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1) 결혼식, 장례식, 회갑과 같은 경조사에 참가하는 경우
- 2) 영농교육, 직업훈련, 연수 등에 참가하는 경우
- 3) 출산, 산전, 산후에 산모의 건강을 돌보는 경우
- 4) 정기휴가나 여행을 갈 경우
- 5) 주말에 휴식을 취하는 경우
- 6) 몸을 다치거나 병이 난 경우
- 7) 갑자기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생길 경우
- 8) 각종 회의, 모임 등에 참석하는 경우
- 9) 기타()

문항 17-2. (문항 17에서 1 또는 2에 응답한 경우) 귀하는 자신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할 때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도우미 이용료(1일)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1만원 미만 | 2) 1만원~1만 5천 원 미만 |
| 3) 1만 5천 원~2만 원 미만 | 4) 2만 원~2만 5천 원 미만 |
| 5) 2만 5천 원~3만 원 미만 | 6) 3만원~3만 5천 원 미만 |
| 7) 3만 5천 원~4만 원 미만 | 8) 4만 원 이상 |

문항 17-3. (문항 17에서 3에 응답한 경우) 귀하께서 농가 도우미제도를 이용

하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것 같아서
- 2) 개인적으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 3) 필요할 때마다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 4)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 5) 기타()

문항 18. 귀하께서는 농가 도우미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에 따라서 도우미 이용료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차등을 두어야 한다 2) 차등을 둘 필요가 없다 3) 모르겠다

문항 19. 만약 귀하가 농가 도우미 요원으로 선발된다면 전임 또는 시간제 도우미로서 작업의 종류에 따라서 적정 수준의 보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농가 도우미 요원으로 참여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 1)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문항 19-1로)
- 2) 가급적 참여하겠다(문항 19-1로)
- 3) 참여하지 않겠다

문항 19-1. 귀하께서는 어떤 농가 도우미 분야에 참여하고 싶은지 원하시는 분야를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1) 일반적인 농사일을 대신해 주는 영농도우미
- 2) 전문적인 농사일을 대신해 주는 영농도우미
- 3) 산전·산후에 산모의 건강관리를 대신해 주는 산모도우미
- 4) 취사, 청소 등의 가사활동을 대신해 주는 가사도우미
- 5) 거동불편 환자들의 건강관리를 대신해 주는 간병도우미
- 6) 어린아이들을 대신 돌봐 주는 보육도우미
- 7) 기타()

문항 20. 이 밖에 귀하가 농가 도우미제도에 관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을 자유롭게

게 해 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송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
농가 도우미제도에 관한 의견조사

(현지통신원 부인용)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촌 현장에서 항상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면서 저희 연구원의 여론조사에도 적극 협조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농림부의 의뢰를 받아 농가 도우미제도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농가 도우미제도는 농업인이 경조사, 출산, 교육참가, 질병, 휴가 등으로 농작업이나 가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 도우미가 이를 대신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조사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닥의 부인께서 직접 작성하여 주십시오. 다만 부인께서 직접 작성하시기 어려우시면 부인의 의견을 물어 현지통신원께서 대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농가 도우미제도의 도입방향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이 기록하신 후에 기재된 조사표를 동봉한 반송봉투에 넣어서 빠른 시일 안에 저희 연구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통신원 여러분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조사표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박대식 박사(02-3299-4345)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1999년 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姜正一

통신원번호

--	--	--	--	--

성명:

전화번호:

(봉투에 기재된 통신원번호 다섯 자리 기재 요망)

주소:

문항 1.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귀댁의 가족 수는 몇 명입니까?

* 본인을 포함해서 총 () 명

문항 2. 귀하의 뒤를 이어 농사를 지을 자녀가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3) 자녀의 의사에 맡긴다

문항 3. 귀하의 연세는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 세

문항 4.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음)

- 1) 무학
- 2) 한학(서당)
- 3) 초등(국민)학교 졸업
- 4) 중학교 졸업
- 5) 고등학교 졸업
- 6) 전문대 졸업
- 7) 대학 졸업 이상

문항 5. 귀하께서는 농사일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까?

- 1) 대부분 내가 한다
- 2) 주된 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일부만 거드는 정도이다
- 3) 과거에는 농사일에 참여했으나 현재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 4) 과거에도 농사일에 참여하지 않았고 현재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문항 6. 귀하는 농사일 이외에 다른 사업을 운영하거나 직장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까?

- 1) 예 (무엇 :)
- 2) 아니오

문항 7. 지금까지 귀하의 영농경력은 얼마나 됩니까?

합계 () 년

문항 8. 지난해 귀댁의 연간소득은 대략 얼마나 되었습니까?

- | | |
|----------------|----------------|
| 1) 500만원 미만 | 2) 500~999만원 |
| 3) 1000~1499만원 | 4) 1500~1999만원 |
| 5) 2000~2499만원 | 6) 2500~2999만원 |
| 7) 3000~3499만원 | 8) 3500만원 이상 |

문항 9. 경조사, 출산, 교육참가, 질병, 급한 개인용무 등으로 농작업이나 가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할 경우에 귀하는 주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까?

- | | |
|----------------------|----------------------|
| 1) 가족 | 2) 친척 |
| 3) 이웃 | 4) 작목반, 계 등의 회원이나 친구 |
| 5) 부탁할 만한 마땅한 사람이 없음 | 6) 기타() |

문항 10. 귀하는 농가 도우미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1) 들어본 적이 없다
- 2) 들어본 적은 있으나 그 내용은 잘 모른다
- 3) 들어본 적이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4)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 다음은 농가 도우미제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농가 도우미제도는 농업인이 경조사(결혼식, 장례식, 회갑 등), 출산, 영농교육 참가, 질병, 휴가, 급한 개인용무 등으로 농작업이나 가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할 경우에 도우미가 이를 대신해 주는 제도로서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2년부터 축산업부문에 '낙농헬퍼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일반 농업부문의 농가 도우미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는 내년부터 각 도별로 1개 시·군을 선발하여 농가 도우미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우선 출산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 도우미를 지원하되 하루 총 비용 중 50%는 국가가 보조하고 나머지 50%는 사용 농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림부에서는 내년도 시범사업에서는 출산의 경우에만 농가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지만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병간호, 가사노동 등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입니다.

문항 11. 귀하께서는 위와 같은 농가 도우미제도가 우리 나라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1) 꼭 필요하다 | 2) 필요하다 | 3) 필요 없다 |
| 4) 전혀 필요 없다 | 5) 잘 모르겠다 | |

문항 12. 귀하께서는 농가 도우미제도가 농어민들의 복지증진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 2)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
| 3)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 4)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
| 5) 잘 모르겠다 | |

문항 13. 귀택에서 농가 도우미가 가장 필요한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 1) 결혼식, 장례식, 회갑과 같은 경조사에 참가하는 경우
- 2) 영농교육, 직업훈련, 연수 등에 참가하는 경우
- 3) 출산, 산전, 산후에 산모의 건강을 돌보는 경우
- 4) 정기휴가나 여행을 갈 경우
- 5) 주말에 휴식을 취하는 경우
- 6) 몸을 다치거나 병이 난 경우
- 7) 갑자기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생길 경우
- 8) 각종 회의, 모임 등에 참석하는 경우
- 9) 기타()

문항 14. 출산, 산전, 산후에 산모의 건강을 돌봐주는 산모도우미의 경우, 이용 가능한 기간을 어느 정도로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1) 출산 전·후의 1개월 2) 출산 후 1개월 3) 출산 후 2개월
- 4) 출산 후 3개월 5) 기타 ()

문항 15. 귀택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농가 도우미는 어떤 것입니까?

- 1) 일반적인 농사일을 대신해 주는 영농도우미
- 2) 전문적인 농사일을 대신해 주는 영농도우미
- 3) 출산, 산전, 산후에 산모의 건강관리를 대신해 주는 산모도우미
- 4) 취사, 청소 등의 가사활동을 대신해 주는 가사도우미
- 5)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건강관리를 대신해 주는 간병도우미
- 6) 기타()
- 7) 필요 없음

문항 16. 귀하께서는 농가 도우미 이용료 중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30% 미만 2) 30%~49% 3) 50%
- 4) 51%~69% 5) 70% 이상

문항 17. 귀하께서는 농가 도우미제도를 이용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 1) 실시되면 즉시 이용하겠다(문항 17-1 및 문항 17-2로)
- 2) 조건이 맞으면 가급적 이용하겠다(문항 17-1 및 문항 17-2로)
- 3) 이용하지 않겠다(문항 17-3으로)

문항 17-1. (문항 17에서 1 또는 2에 응답한 경우) 귀하께서는 농가 도우미제도를 어떤 경우에 이용할 것인 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1) 결혼식, 장례식, 회갑과 같은 경조사에 참가하는 경우
- 2) 영농교육, 직업훈련, 연수 등에 참가하는 경우
- 3) 출산, 산전, 산후에 산모의 건강을 돌보는 경우
- 4) 정기휴가나 여행을 갈 경우
- 5) 주말에 휴식을 취하는 경우
- 6) 몸을 다치거나 병이 난 경우
- 7) 갑자기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생길 경우
- 8) 각종 회의, 모임 등에 참석하는 경우
- 9) 기타()

문항 17-2. (문항 17에서 1 또는 2에 응답한 경우) 귀하는 자신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할 때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도우미 이용료(1일)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1만원 미만 | 2) 1만원~1만 5천 원 미만 |
| 3) 1만 5천 원~2만 원 미만 | 4) 2만 원~2만 5천 원 미만 |
| 5) 2만 5천 원~3만 원 미만 | 6) 3만원~3만 5천 원 미만 |
| 7) 3만 5천 원~4만 원 미만 | 8) 4만 원 이상 |

문항 17-3. (문항 17에서 3에 응답한 경우) 귀하께서 농가 도우미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것 같아서
- 2) 개인적으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 3) 필요할 때마다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 4)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 5) 기타()

**문항 18. 귀하께서는 농가 도우미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에 따라서 도우미 이용
료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차등을 두어야 한다 2) 차등을 둘 필요가 없다 3) 모르겠다

**문항 19. 만약 귀하가 농가 도우미 요원으로 선발된다면 전임 또는 시간제 도
우미로서 작업의 종류에 따라서 적정 수준의 보수를 보장받을 수 있
습니다. 귀하께서는 농가 도우미 요원으로 참여하실 생각이 있습니
까?**

- 1)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문항 19-1로)
- 2) 가급적 참여하겠다(문항 19-1로)
- 3) 참여하지 않겠다

**문항 19-1. 귀하께서는 어떤 농가 도우미 분야에 참여하고 싶은지 원하시는
분야를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1) 일반적인 농사일을 대신해 주는 영농도우미
- 2) 전문적인 농사일을 대신해 주는 영농도우미
- 3) 산전·산후에 산모의 건강관리를 대신해 주는 산모도우미
- 4) 취사, 청소 등의 가사활동을 대신해 주는 가사도우미
- 5) 거동불편 환자들의 건강관리를 대신해 주는 간병도우미
- 6) 어린아이들을 대신 돌봐 주는 보육도우미
- 7) 기타()

**문항 20. 이 밖에 귀하가 농가 도우미제도에 관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을 자유롭
게 해 주십시오.**

부록 2. 낙농헬퍼사업시행요령(천안낙농축산업협동조합)

낙농헬퍼사업시행요령 (천안낙농축산업협동조합)

- 제 1 조 (목적) 이 요령은 천안낙농축산업협동조합(이하 본조합이라한다) 낙농헬퍼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범위) 본 조합의 낙농헬퍼사업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3 조 (정의) 이 요령에서 낙농헬퍼사업이라 함은 “조합원의 목장관리를 일시적으로 위탁받아 일정액의 이용료를 받고 대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 4 조 (사업내용) 낙농헬퍼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낙농헬퍼사업에 관한 제도정착, 보급 및 홍보
 2. 낙농헬퍼 요원의 선발, 교육 및 홍보
 3. 낙농헬퍼 요원의 출장 및 근무
 4. 낙농헬퍼 이용계획의 수립 및 운영
 5. 기타 낙농헬퍼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 5 조 (위원회 구성)낙농헬퍼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낙농헬퍼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
- ◆ 위원장 : 조합장
 - ◆ 위 원 : 임원 4명, 이용조합원 대표 5명, 전무, 지도상무
 - ◆ 간 사 : 지도계장
- 제 6 조 (위원선출 및 임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 조합장, 전무, 지도상무 : 당연직
 2. 임원대표 :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조합장이 임명
 3. 이용조합원 대표 : 협의회에서 추천하여 조합장이 임명

제 7 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심의 결정한다.

1. 본 요령의 재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이용료의 결정, 가입회비, 이용료 징수방법
 - 작업범위, 작업시간
 - 헬퍼요원의 신분보장, 급여
 - 사고처리 등
2. 기타 낙농헬퍼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8 조 (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에는 위원장이 소집 할 수 있다.

제 9 조 (위원회 의결방법)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0 조 (협의회 구성) 낙농헬퍼사업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그 기초조직으로서 낙농 헬퍼 이용조합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

- ◆ 협의회장 : 1명(협의회에서 선출)
- ◆ 회 원 : 낙농헬퍼 이용회원
- ◆ 간 사 : 지도상무, 지도담당직원, 헬퍼요원

제 11 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협의 활동한다.

1. 낙농헬퍼 이용회원의 가입추진 및 사업홍보
2. 낙농헬퍼 이용목장의 의견조정
3. 각종 목장관리 기록 및 기장 유도
4. 기타 낙농헬퍼 운용에 관한 사항

제 12 조 (협의회 개최) 협의회는 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에는 협의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13 조 (협의회 의결방법) 협의회는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4 조 (이용자) 낙농헬퍼사업의 이용자는 본 조합의 조합원으로 한다.

제 15 조 (회원제도) 낙농헬퍼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조합원에 한하여 낙농헬퍼 이용회원 제도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회원은 100,000원의 가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에게는 이용료의 할인혜택과 이용신청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3. 가입회비는 어느 경우에든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4. 회원은 협의회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5. 회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낙농헬퍼를 이용하여야 한다.
(단, 본인이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기본료를 협의회 기금으로 납부한다.)

제 16 조 (가입비의 운용) 회원이 납부한 가입회비는 본 조합의 예산과는 별도로 관리하며 낙농헬퍼사업 시설투자 및 협의회 활동기금으로 운용한다.

제 17 조 (이용기간) 낙농헬퍼의 이용기간은 1회 연속 3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협의회장의 특별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8 조 (이용신청) 낙농헬퍼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매월 20일까지 다음달의 이용예정일을 서면으로 협의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비회원은 매월 22일부터 25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9 조 (이용신청 변경) 기 신청한 이용예정일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협의회에 신고해야 하며, 기본요금의 50%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20 조 (이용일 조정) 낙농헬퍼의 이용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위에 의거 조정한다.

(개정 '96. 8. 23)

1. 친상을 당한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한다.
2. 이용 접수 일자가 빠른 자를 우선으로 한다.
3. 이용실적이 많은 자를 우선으로 한다.
4. 회원은 비회원에 대해 우선으로 한다.
5. 기타 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장이 중재하여 결정한다.

제 21 조 (이용료의 구분) 낙농헬퍼의 이용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별표 1)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회원과 비회원
2. 평일과 공휴일
3. 사육두수
4. 이용구분
5. 시간외 작업
6. 시설의 기계화 정도
7. 관리인이나 보조원이 있는 경우는 착유우만 헬퍼이용료로 계산

제 22 조 (이용료 징수) 낙농헬퍼 이용료의 징수는 다음 달 유대에서 공제하여 이용수익으로 처리한다(단, 시간외 근무에 따른 해당 이용료는 헬퍼요원에게 지급한다).

제 23 조 (이용자의 의무) 낙농헬퍼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우사 내에 개체별 자료급여 표지판을 준비해야 한다.
2. 젖소 개체식별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이표, 목번호표 등).
3. 개체별 유량과 사료급여량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4. 착유기구류는 정해진 곳에 반드시 놓아두어야 한다.
5. 건유우, 유방염치료우, 항생물질 투여우 등 각 개체별 특징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6. 착유자를 대신하여 생기는 유량의 감소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헬퍼요원에게 위탁한 기간 동안에는 일체의 작업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
8. 헬퍼요원의 이용은 목장의 고용인력을 대신할 수 없다.
9. 이용자는 헬퍼요원에게 어떠한 금품도 제공해서는 안된다.
10.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통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제 24 조 (책임소재) 낙농헬퍼 이용에 따른 책임소재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는 헬퍼요원에게 인수인계 사항을 충분히 협의 통보하여야 하며 인계되지 않은 사항으로 발생한 손해는 헬퍼요원에게 귀책되지 않는다.
2. 헬퍼요원은 항상 각별한 주의 의무를 갖고 이용자의 가족대행자로서

업무에 임해야 한다.

3. 이용자는 짓소의 사고, 기계 및 기구, 시설, 우유 등 헬퍼이용 기간중 확실한 인수인계 사항을 제외하고 발생한 일반적 손해에 대해 조합이나 헬퍼요원에게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4. 헬퍼요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가 책임을 지지 않고 보험에 의해 처리한다(개정 '96. 8. 23).

제 25 조 (헬퍼요원의 자격) 본 조합이 시행하는 교육을 필하거나 관계기관에서 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고 낙농헬퍼로서 충분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

제 26 조 (헬퍼요원의 업무) 이용자에게 위탁받는 헬퍼요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착유에 관한 업무 : 착유, 착유량 측정, 기계점검 등
2. 사료급여에 관한 업무 : 농후사료 및 조사료 급여
(단, 조사료 급여업무는 볏짚, 사이레지 및 예취된 청초 등의 급여로서 조사료의 예취작업 등 사료포장의 작업은 제외됨)
3. 우사청소에 관한 업무 : 수정, 분만, 치료 등의 보조 및 연락

제 27 조 (헬퍼요원의 근무시간) 헬퍼요원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의하며 이용자의 작업시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오전 = 05 : 00 - 08 : 00(3시간)

● 정오 = 11 : 00 - 13 : 00(2시간)

● 오후 = 16 : 00 - 19 : 00(3시간)

(단, 작업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정규작업 이외의 작업은 이용자와의 협의에 따라 헬퍼요원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시간할증에 대한 일정한 할증 이용료를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시간할증 근무는 2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제 28 조 (헬퍼요원 운용) 헬퍼요원은 헬퍼업무에 전념하여야 하며 출장근무가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지도보조 업무에 임해야 한다.

제 29 조 (헬퍼요원 급여) 헬퍼요원 급여는 다음과 같다.

1. 급여규정에 의한 제 급여를 지급한다.
2. 헬퍼수당은 (별표 2)에 의거 출장일수에 따라 일정 인정률로 지급하며 지급대상기간은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로 하며 당월급여 지급일

에 지급한다.

3. 시간할증 수당은 시간할증 이용료 전액을 지급하며 지급대상 기간은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로 하며 당월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4. 휴일근무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은 급여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 30 조 (차량운행) 헬퍼업무 차량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차량은 조합 소유로 한다.
2. 차량의 모든 관리는 헬퍼요원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3. 근무시간 이외에 대한 차량의 사적(관내에서의 출퇴근)인 운행에 대하여 부득이한 경우 허용할 수 있다.
4. 조합에서 규정하는 차량의 이용년한 이전에 폐차할 시에는 헬퍼요원이 책임지고 폐차토록 한다.
5. 차량운영에 필요한 유류대, 수리비, 보험료, 세금 등 운영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 31 조 (헬퍼요원 신분보장) 헬퍼요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헬퍼요원에게 다음과 같은 대우를 해주도록 한다.

1.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헬퍼자격(낙농경영관리사)를 부여한다.
2. 헬퍼요원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당 조합 인사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승진 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3. 헬퍼요원으로서 일정 기간 근무 후 자영을 원하는 자는 낙농후계자로 지정하여 장기저리 낙농자금을 융자 지원 할 수 있다.

제 32 조 (헬퍼요원 의무복무기간) 헬퍼요원은 자격취득 후 2년 동안 의무적으로 낙농헬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만약 그 기간 내에 자의적으로 퇴직 시에는 헬퍼요원 양성에 따른 교육비, 연수비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단, 부상으로 인하여 부득이 헬퍼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33 조 (기타사항) 기타 낙농헬퍼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한다.

부 칙

이 요령은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요령은 1996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요령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요령은 1998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헬퍼이용료

(개정'98. 11. 10)

구 분	단 위	금 액	비 고
기본료(착유우)	20두까지	40,000원	
두수할증료(착유우)	1두당	1,000원	착유우 20두 초과두수
두수할증료(육성우)	1두당	500원	착유우를 제외한 두수
시간할증료	1시간당	10,000원	정규작업 이외의 작업 시

※ 1인 이용을 기준으로 함(당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1. 공휴일의 이용요금은 1일 출장에 15,000원을 할증 가산함.
2. 비회원의 이용요금은 1일 결정요금의 30% 할증 가산함.
3. 이용구분에 따라 1일 결정요금에 대한 적용율은 다음과 같다:
 - ◆ 당일 오전과 오후 이용 : 90%
 - ◆ 당일 오전 또는 정오 또는 오후 이용 : 80%
 - ◆ 중식 이용 : 40%(단 의무이용 기간 내에 중식이용 요금의 기본요금 미만 시 기본요금을 공제함)

별표 2. 낙농헬퍼요원수당지급

1. 급여규정에 의한 특수업무 수당

담당업무	구 분	지급금액	비 고
헬퍼업무	헬퍼종사년수 1년 미만	50,000원	
	헬퍼종사년수 1년 이상 3년 이하	70,000원	
	헬퍼종사년수 3년 이상 5년 이하	90,000원	
	헬퍼종사년수 5년 이상	110,000원	

2. 출장일수에 따른 수당지급 기준표

직 명	월 헬퍼출장일수	지급금액	비 고
낙농헬퍼요원	10일 미만	100,000원	
	10 ~ 15일 미만	130,000원	
	15 ~ 20일 미만	170,000원	
	20 ~ 25일 미만	200,000원	
	25일 이상	250,000원	